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특 별 회 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 문 위 원 이선주

목 차

제1장 개요

I. 총 괄	1
II.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2
1. 일반회계	2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6
III. 재무제표	18
1. 재정상태표	18
2. 재정운용표	20
3. 순자산변동표	21
IV. 성과보고서	22

제2장 검토의견

I.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4
1.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후 행정소송 제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등 ..	24
(1) 조세심판 후 행정소송 제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26
(2) 전자적 송달규정 마련 등을 통한 전자심판제도 내실화 필요	29

2.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국정과제 점검회의 운영 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	34
3.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38
4.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혁신전략회의 집행관리 부적정	41
(1)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선급금 집행 부적정	46
(2)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예산의 집행관리 부적정	49
5.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무상보수기간 중 ‘ODA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과다지급 등	55
(1) 무상보수기간 중 ‘ODA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과다지급	58
(2) 법률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수정 절차 준수 필요	63
6.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민간위탁사업자의 사무편람 승인 및 위탁사무 감사 부적정	68
7.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실적 제고 필요	74
8.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훈령 개정을 통한 임시조직 활동 기한 연장 부적정 등	79
(1) 훈령 개정을 통한 임시조직 활동 기한 연장 부적정	80
(2) 국내여비 편성 부족으로 다른 비목 조정 문제	83

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85

1. 공통: 연구회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	85
2. 공통: 수의계약 비중 축소 및 규정 정비 필요 등	90
3. 공통: 결산잉여금 과다	95
4. 공통: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 준수 필요	100
5. 공통: 능률성과급 체계 개선	105
6. 공통: 연구과제 미배정으로 인한 수시연구사업 집행부진 개선 필요 등	108

7. 공통: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	116
8. 공통: 우수직원 해외연수 예산 비목 통일 필요	122
9. 연구회: 연구개발적립금 운용 개선 검토	125
10. 산업연구원: 한-아세안 정책연구협력센터 운영 개선 필요	131
11. 한국개발연구원: 과도한 상품권 구입 및 기념품 제작 주의 필요	136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주의	139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기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는 방안 등 검토 필요	142
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146
1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 집행 개선	151
16. 한국환경연구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행태 개선 필요 등	157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행태 개선 필요	158
(2) 환경정책교육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필요	160

제1장 개요

1. 총괄

-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재정규모(세출예산현액 순계 기준)는 2023회계연도 재정규모 6,782억 4,900만원 대비 158억 9,300만원 감소한 6,623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6,507억 2,500만원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16억 3,1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6,507억 2,500만원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감소 202억 1,300만원에 주로 기인함.
- 2024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116억 3,100만원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감소 2억 9,900만원에 기인함.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A)	2024년도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일반회계(a)	666,319	650,725	△15,594	△2.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b)	11,930	11,631	△299	△2.5
총 재정규모(c=a+b)	678,249	662,356	△15,893	△2.3

주: 예산현액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II.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2,300만원으로, 8,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주요 수납내역은 출연·보조사업 이자수입, 집행잔액 등 반납금 5,500만원, 명예퇴직자 임용에 따른 퇴직금 환수 1,000만원 등임.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증 감 (B-A)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1	21	21	-	-	20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22	61	61	-	-	39
계	23	82	82	-	-	59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세출결산

1) 총 괄

□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6,489억 1,900만원, 전년도 이월액(4,500만원)과 예비비(17억 6,0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07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9%인 6,239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5,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60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경비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지출액의 9.2%인 576억 9,000만원이 인건비로 집행되었고, 2.0%인 125억 1,100만원이 기본경비로, 88.7%인 5,537억 8,000만원이 사업비로 각각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이체	예비비				
□ 합계	648,919	648,919	45	1,113 1,113	-	1,760	650,725	623,981	654	26,092
○ 인건비	59,222	59,222	-	64 △243	-	1,279	60,323	57,690	-	2,633
○ 기본경비	13,927	13,927	-	282 △392	-	-	13,817	12,511	42	1,264
-기본경비 (대상)	4,825	4,825	-	41 △101	-	-	4,765	4,453	-	312
-기본경비 (비대상)	9,102	9,102	-	241 △291	-	-	9,052	8,058	42	952
○ 사업비	575,770	575,770	45	767 △478	-	481	576,585	553,780	612	22,195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인건비 및 기본경비

□ 인건비의 당초 예산액은 592억 2,200만원이고, 전용 등에 따른 변동분 11억 100만원이 증액 반영된 예산현액은 603억 2,300만원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이 중 576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본부 인건비는 당초 예산액 476억 1,200만원이었으나,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기간연장에 따른 예비비 12억 7,900만원 편성 등, 이를 반영한 예산현액 487억 1,300만원 중 94.7%에 해당하는 461억 4,600만원이 집행되고 25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조세심판원 인건비의 당초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모두 116억 1,000만원이나, 조세심판원 현원 증가에 따른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해 6,4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으며, 예산현액 중 99.4%에 해당하는 115억 4,400만원이 집행되고 6,6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이체				
□ 인건비	59,222	59,222	-	64 △243	-	60,323	57,690	-	2,633
○ 본부 인건비	47,612	47,612	-	△179	-	48,713	46,146	-	2,567
○ 조세심판원 인건비	11,610	11,610	-	64 △64	-	11,610	11,544	-	66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2024회계연도 기본경비는 당초 예산액 139억 2,700만원이었으나, 국정과제 점검회의 관련 행사 용역 부족분 전용 7,000만원 등 1억 1,000만원을 감액 반영한 예산현액 138억 1,700만원 중 90.5%에 해당하는 125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6,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본부 기본경비(총액)는 당초 예산액 41억 1,000만원에서,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한 전용 등 6,000만원을 감액 반영한 예산현액 40억 5,000만원 중 93.4%에 해당하는 37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는 당초 예산액 및 예산현액 모두 7억 1,500만원이며, 이중 94.0%에 해당하는 6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본부 기본경비는 당초 예산액 77억 6,000만원에서, 국무조정실 현안 회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한 전용 등 5,000만원을 감액 반영한 예산현액 77억 1,000만원 중 87.7%에 해당하는 67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국제회의 개최일 연기로 차년도로 이월하고 9억 3,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는 당초 예산액 및 예산현액 모두 13억 4,200만원으로, 이중 96.9%에 해당하는 13억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은 용역 완료일 미도래로 차년도로 이월하고 2,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본경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이체				
□ 기본경비	13,927	13,927	-	282 △392	-	13,817	12,511	42	1,264
○ 본부 기본경비(총액)	4,110	4,110	-	41 △101	-	4,050	3,781	-	269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15	715	-	-	-	715	672	-	43
○ 본부 기본경비	7,760	7,760	-	241 △291	-	7,710	6,758	20	932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342	1,342	-	-	-	1,342	1,300	22	2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 주요 사업비

□ 2024년도 주요사업비는 당초 예산액 5,757억 7,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예비비 4억 8,1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한 예산현액 5,765억 8,500만원 중 96.0%인 5,537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완료일 미도래 등으로 인해 6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미배정에 따른 불용 등에 의해 221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2024회계연도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등	예비비				
□ 합계	575,770	575,770	45	767 △478	481	576,585	553,780	612	22,195
○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7031)	5,489	5,489	-	160 △90	-	5,559	5,430	-	129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77	177	-	120 △50	-	247	235	-	12
국정운영 정보화	1,346	1,346	-	-	-	1,346	1,339	-	7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724	2,724	-	40 △40	-	2,724	2,637	-	87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1,242	1,242	-	-	-	1,242	1,219	-	23
○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7032)	1,498	1,498	-	12 △12	481	1,979	1,855	5	120
공공기관 갈등관리	350	350	-	-	-	350	336	-	14
대테러센터 운영	674	674	-	6 △6	-	674	644	-	30
인권보호관 지원	386	386	-	6 △6	-	386	352	5	29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88	88	-	-	481	569	523	-	47
○ 규제개혁(7033)	9,150	9,150	45	412 △233	-	9,374	8,827	-	547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759	1,759	-	186 △186	-	1,759	1,712	-	47
규제개혁 정보화	2,237	2,237	-	-	-	2,237	2,190	-	47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5,154	5,154	45	226 △47	-	5,378	4,925	-	453
○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7035)	25,938	25,938	-	57 △17	-	25,978	23,974	607	1,397
주한미군기지이전 지원단 운영	105	105	-	3 △3	-	105	96	-	9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2,972	2,972	-	5 △5	-	2,972	2,788	-	184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108	108	-	-	-	108	96	-	12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159	159	-	3 △3	-	159	155	-	4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등	예비비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3,410	3,410	-	-	-	3,410	3,409	-	1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8,984	8,984	-	-	-	8,984	8,191	353	44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운영	5,165	5,165	-	-	-	5,165	4,719	-	446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	481	481	-	6 △6	-	481	439	-	42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729	729	-	-	-	729	591	54	84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위원회 운영	169	169	-	-	-	169	112	-	57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183	183	-	40	-	223	205	-	18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3,473	3,473	-	-	-	3,473	3,173	200	100
○ 행정지원(7036)	7,429	7,429	-	126 △126	-	7,429	7,049	-	381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1,139	1,139	-	-	-	1,139	931	-	208
내부 정보화(정보화)	1,655	1,655	-	-	-	1,655	1,653	-	2
공직복무 관리	868	868	-	33 △33	-	868	842	-	26
국무총리 공관관리	1,126	1,126	-	55 △55	-	1,126	1,069	-	57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1,499	1,499	-	-	-	1,499	1,438	-	61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433	433	-	-	-	433	412	-	22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09	709	-	38 △38	-	709	704	-	5
○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7037)	1,551	1,551	-	-	-	1,551	1,425	-	126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567	567	-	-	-	567	542	-	25
국회 정당 및 시민사회 등 과의 소통강화	984	984	-	-	-	984	883	-	101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8810)	154	154	-	-	-	154	154	-	-
○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 (1500)	524,561	524,561	-	-	-	524,561	505,066	-	19,495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사업(7031)은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사업으로, 55억 5,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7.7%인 54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사업(7032)은 공공기관 갈등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19억 7,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3.7%인 18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음.
- ☐ 규제개혁 사업(7033)은 규제개혁위 운영 및 규제개혁 정보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93억 7,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4.2%인 88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음.
- ☐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사업(7035)은 현안과제 추진 지원, 국제 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59억 7,8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2.3%인 239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음.
- ☐ 행정지원 사업(7036)은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을 위한 비용 집행과 내부정보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74억 2,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4.9%인 70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사업(7037)은 정당 및 시민사회,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5억 5,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1.9%인 14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음.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사업(8810)은 1억 5,400만원의 예산현액을 전액 집행하였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사업(1500)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출연을 하는 사업으로, 5,245억 6,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6.3%인 5,050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음.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 2024회계연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 5,245억 6,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23억 7,000만원을 합한 5,469억 3,100만원이며 이 중 5,274억 3,700만원이 집행되고 155억 8,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¹⁾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전년도 이월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출연 받은 출연금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기준에 의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사업(1500)의 일반회계 결산기준에 의한 전년도 이월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과는 회계처리 주체와 인식기준 측면에서 구분되는 별도의 결산수치임.

〈2024회계연도 출연금예산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	예산액		예산 결정 후 증감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유보액)	차년도 이월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예비비	전용액	이용및 이체				
계	524,561	524,561	22,370	-	-	-	546,931	527,437	19,494	15,584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18,777	18,777	3,655	-	-	-	22,432	21,798	634	959
24개 연구기관	505,784	505,784	18,715	-	-	-	524,499	505,639	18,860	14,625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로 연구과제 수행상 다음연도에 걸쳐 집행되거나 차년도로 과제수행이 순연됨에 따라 발생하였고, 194억 9,400만원은 2024년도 인건비 등 집행잔액 예상액을 고려하여 연말 미교부 처리함. 이월액 155억 8,400만원은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2025년도 사업비 예산에 편성되었음.

□ 정부출연금과 자체수입을 합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출연연구기관의 2024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결산액은 각각 예산액 1조 1,310억 5,200만원보다 300억 8,300만원이 증가한 1조 1,61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결산액 중 정부출연금은 5,050억 6,300만원이고, 자체수입은 5,564억 7,900만원으로 정부출연금이 전체 수입액의 43.5%를 차지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출연연구기관 결산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2024 예산액(A)	2024 결산액(B)	증감액 (B-A)	비 고
수 입	1. 정부출연금	524,561	505,063	△19,498	
	○ 정부출연금 편성	526,955	507,457	△19,498	
	- 인건비	323,086	305,963	△17,123	
	- 기관고유사업비	53,098	52,192	△906	
	- 일반사업비	89,355	87,921	△1,434	
	- 경상운영비	53,694	53,676	△18	
	- 시설비	7,722	7,706	△16	
	○ 정부출연금 대체(△)	△2,394	△2,394	-	
	2. 자체수입	507,150	556,479	49,329	
	- 수탁용역수입	413,753	451,592	37,839	
	- 정부대행사업 수입	79,357	81,432	2,075	
	- 이자수입	3,590	6,701	3,111	
	- 기타수입	8,056	14,360	6,304	
	- 청사보증금 및 매각잔액	-	-	-	
	- 정부출연금 대체	2,394	2,394	0	
	3. 전기이월금	65,945	65,945	0	
	4. 융자금 회수	-	-	-	
	5. 차입금	3,019	2,849	△170	
	6. 연구개발적립금	30,377	30,798	421	
	계	1,131,052	1,161,135	30,083	
지 출	1. 인건비	449,595	410,232	△39,363	
	2. 연구사업비	555,225	512,353	△42,872	
	○ 기관고유사업비	69,478	61,973	△7,505	
	○ 일반사업비	101,551	91,117	△10,434	
	○ 수탁용역사업비	302,805	280,745	△22,060	
	○ 정부대행사업비	81,058	78,267	△2,791	
	○ 청년인턴쉽운영	332	250	△82	
	3. 경상운영비	72,086	68,661	△3,425	
	4. 시설비	12,211	10,799	△1,412	
	5. 기타(차입금 등)	3,459	3,288	△171	
	6. 연구개발적립금	38,476	23,861	△14,615	
	7. 결산잉여금처분 등	-	131,942	131,942	
	계	1,131,052	1,161,135	30,08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 이월내역

-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총 6억 5,4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사업완료일 미도래에 기인함.

〈2024회계연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금 액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완료일('25.1월) 미도래로 인한 이월	353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	청년정책 정보의 원활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통합시스템과 지자체 시스템간 연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차년도 이월	165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		35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완료일('25.8월) 미도래로 인한 이월	36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용역 완료 지연으로 인한 이월	22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OECD고위급 국정총괄기관회의 연기('24.12월 → '25.3월)	20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완료일('25.4월) 미도래로 인한 이월	18
인권보호관 지원	서버 이관 배정 지연 등 서비스 전환 순연에 따른 이월	5
총 계		654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5) 이·전용내역

- 2024회계연도 이용은 없으며, 전용액은 전년도 12억 2,800만원 대비 42.8% 감소한 7억 300만원임.

- 구체적인 이·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① 규제혁신추진단 고용부담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1억 7,900만원, ② 국무총리 공관 보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4,400만원 ③ 여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3억 3,100만원²⁾, ④ 국정
과제 점검회의 관련 행사를 위한 일반용역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7,000만원 등을 각각 전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내 용	금 액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고용부담금	40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국내여비	60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일반용역비	40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국내여비	20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국내여비	38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국내여비	27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국내여비	150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국내여비	36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일반용역비	70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고용부담금	179
(전용) 기관 운영 예산 부족분 확보 - 실시설계비	44
총 계	703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 불용내역

□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6,507억 2,500만원 대비 4.0%인 260억 9,200만원이며, 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194억 9,500만원
미배정에 따른 불용에 기인함.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000만원,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3,800만원, 공직복무 관리 2,700만원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1억 5,0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3,600만원 등

〈2024회계연도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불용액
합 계	26,092
○ 인건비	2,633
○ 기본경비	1,264
○ 사업비	22,195
-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129
- 사회통합정책 및 안전관리 추진	120
- 규제개혁	547
-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1,397
- 행정지원	381
-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126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19,495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다. 예비비 지출

□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비비는 17억 6,1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16억 3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이는 법률 개정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본예산에 미반영된 위원회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한 것임.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일반 예비비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1,761	1,603	15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액 및 수납액은 없었음.

나.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예산현액 116억 3,100만원이며, 이 중 94.2%인 109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7,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등	이체				
□ 합계	11,631	11,631	-	-	-	11,631	10,956	-	675
○ 에너지경제연구원 (R&D) 출연금	11,631	11,631	-	-	-	11,631	10,956	-	675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다. 이월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전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마. 불용내역

☐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116억 3,100만원 대비 5.8%인 6억 7,500만원이며,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금 6억 7,500만원 미배정에 따른 불용에 기인함.

〈2024회계연도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불용액
합 계	675
- 에너지경제연구원(R&D)	675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III.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³⁾

□ 2024회계연도 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산은 4,183억 4,100만원이고, 부채는 19억 200만원이며, 순자산은 4,164억 3,900만원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1,181	808	373	46.2 %
	일반유형자산	407,001	407,384	△383	△0.1 %
	무형자산	9,074	4,728	4,346	91.9 %
	기타비유동자산	1,085	745	340	45.6 %
	자산계	418,341	413,664	4,677	1.1 %
부 채	유동부채	62	-	62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1,841	1,544	297	19.2 %
	부채계	1,902	1,544	358	23.2 %
순자산	기본순자산	127,637	127,637	-	-
	적립금 및 잉여금	1,143	△3,481	4,624	△132.8%
	순자산조정	287,659	287,964	△305	△0.1%
	순자산계	416,439	412,120	4,319	1.0%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며, 현재의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 2024회계연도 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46억 7,7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내부개발소프트웨어 및 외부구입소프트웨어 당기 구입에 의한 무형자산 증가에 기인함.
- 2024회계연도 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채는 전년도 말 대비 3억 5,800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직 퇴직금 관련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등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증가에 기인함.
- 2024회계연도 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순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43억 1,900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운영결과와 재원의조달 및 이전의 영향에 기인함.

2. 재정운영표⁴⁾

□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운영 결과는 6,395억 4,700만원 손실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 6,608억 9,200만원 손실 대비 손실 규모가 213억 4,500만원 감소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 순원가	516,276	540,515	△24,239	△4.5 %
II. 관리운영비	123,353	120,393	2,960	2.5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82	16	66	412.5 %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39,547	660,892	△21,345	△3.2 %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639,547	660,892	△21,345	△3.2 %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프로그램 순원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등 프로그램 원가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242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관리운영비⁵⁾는 인건비 등의 증가로 29억 6,000만원 증가하였음.

□ 비배분수익⁶⁾은 전년도 대비 6,600만원 증가하였고,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는 6,395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억 4,500만원 감소함.

4) 재정운영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며,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냄.

5) 프로그램과 직접적 관련되지 않는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관련 비용

6) 재화 및 용역 등 반대급부의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중 프로그램과 관련없이 발생하는 수익

3. 순자산변동표

- 202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기말순자산은 4,164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기말순자산 4,121억 2,000만원 대비 43억 1,800만원 증가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기초순자산	412,120	411,178	942	0.2 %
II. 재정운영결과	639,547	660,892	△21,345	△3.2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44,171	662,144	△17,973	△2.7 %
IV. 조정항목	△305	△310	5	1.6 %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416,438	412,120	4,318	1.0 %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기초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9억 4,200만원 증가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액이 전년도 대비 179억 7,3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비(세출)의 감소에 따른 국고수입의 감소 등에 기인함.
- 조정항목의 전년도 대비 증가액은 500만원으로, 자산재평가이익의 증가에 기인함.

IV. 성과보고서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4년도 정책비전을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로 설정하여, 1대 전략목표를 설정·추진하였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관리체계도〉

임무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 제정당 및 국민과의 소통에 관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여 국정운영 성과를 제고한다
비전	협업·현장·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선도
전략목표	I.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성과목표	1.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24년도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성과달성도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도는 총 2개 지표 중 1개를 달성(50.0%)하였음.

-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는 전략목표 ‘I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의 프로그램목표 ‘I-1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한다’ 중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실적4.53/목표4.60 달성률98.5%)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 달성도 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도			
	합 계	성과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I.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2	-	1	1
합 계	2	-	1	1

주: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100이상~130%미만, 미달성: 100% 미만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4년도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프로그램목표 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보면, 2024년도 결산실적은 예산 대비 93.6%인 409억원임.

〈프로그램목표 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목표관리체계		회계구분	단위사업명	2024 예산	2024 결산	집행률
총 계				437	409	93.6
전략목표 I: 국무총리의 국정통할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				437	409	93.6
프로그램목표 I-1: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국무총리 보좌역량 제고				437	409	93.6
I-1-일반재정(1)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일반회계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56	54	97.7
I-1-일반재정(4)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일반회계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20	19	93.8
I-1-일반재정(3)	규제개혁	일반회계	규제개혁	94	88	94.2
I-1-일반재정(4)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일반회계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252	234	92.6
I-1-일반재정(5)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일반회계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16	14	91.9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제2장 검토의견

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조세심판원⁷⁾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구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으로,⁸⁾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2024회계연도 조세심판원의 세부사업은 4개로, 총 예산현액 141억원 중 139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5,100만원(1.1%)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조세심판원 결산내역〉

사업명	2024						2025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	불용액	예산액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11,610	△64 64	11,610	11,543	-	66	12,243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15	-	715	672	-	43	715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342	-	1,342	1,300	22	20	1,440
조세심판원 정보화(정보화)	433	-	433	412	-	22	303
합 계	14,100	△64 64	14,100	13,927	22	151	14,868

(단위: 백만원)

(자료: 조세심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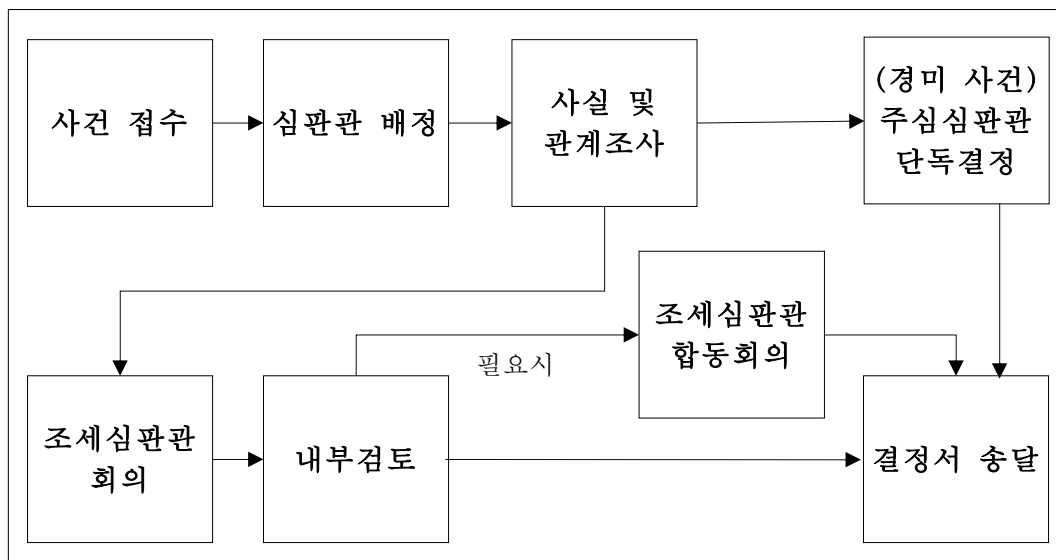
7) 세부사업: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7001-102),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7011-202),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7036-307)

8)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하 생략)

□ 조세심판원은 ① 납세자가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② 이를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되⁹⁾ ③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등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결정함.¹⁰⁾

〈조세심판청구사건의 접수, 심리 및 결정절차〉



9)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5천만원(지방세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단서).

10) 「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 절차) ②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2.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3.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검토의견

(1) 조세심판 후 행정소송 제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국세기본법」 제81조¹¹⁾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¹²⁾에 따르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을 반기마다 조세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규정은 관세나 지방세 사건의 경우에도 준용 적용됨.¹³⁾
- 동 규정은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그 내용이나 결과 등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소송과 조세심판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¹⁴⁾ 2022년 12월 법률 개정 이후 관련 시행령 마련을 통해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었음.

11) 「국세기본법」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조세심판원 운영규정(국무조정실훈령 제215호)」 제36조(관련기관 협조) ①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조세심판 청구번호를 포함한다)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서 사본

13)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제2항 및 제80조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 1. 19. ~ 2. 3.) 중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제출한 행정소송 제기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대로 된 소송제기 사건 자료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후 행정소송 제기 사건 현황〉

연도	내국세		관세		지방세	
	조세심판 각하기각 건수	소송제기* 건수	조세심판 각하기각 건수	소송제기* 건수	조세심판 각하기각 건수	소송제기 건수
2023	9,293	1,269 (13.7%)	139	50 (36.0%)	3,431	작성불가**
2024	5,345	1,223 (22.9%)	129	32 (24.8%)	1,793	작성불가**

*소송제기 건수: 해당 연도에 1심 소송이 제기된 건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는 그 정확도가 낮아 통계 작성 불가

(자료: 「조세심판통계연보」 및 조세심판원 제출자료 재구성)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¹⁵⁾에 협조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받고는 있으나, 일부 소송사건이 누락되거나 조세심판을 거치지 않은 사건¹⁶⁾이 포함되는 등 관련 자료의 일관성, 정확성 및 완결성에 한계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¹⁷⁾

□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¹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은 과

15)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6)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조세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 제기 가능

17) 이에 따라, 현재는 제출받은 자료 중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사건(조세심판원에서 각하기각되었으나 법원에서 원고 승소한 사건)에 한정하여 사례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함.

18)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¹⁹⁾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세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²⁰⁾²¹⁾

□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조세심판의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을 거쳤음에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현황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대로 통보받게 된다면, 불복의 원인을 분석해 심판과 소송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조세심판 이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국민 불편이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행정소송 처리 상황을 제대로 통보받음으로써 조세심판 후 행정소송 제기 사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19)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62조제1항),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20) 다만,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후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도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1)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전자적 송달규정 마련 등을 통한 전자심판제도 내실화 필요

- 조세심판원은 홈페이지 및 내부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를 매년 집행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홈페이지 개선 용역비 1억 4,6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음.

〈조세심판 정보화(7036-307)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현액	283	283	283	433
집행액	277	277	278	412 (홈페이지개선 146 포함)

(자료: 조세심판원)

- 조세심판원은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를 통해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접수하는 등 전자심판제도²²⁾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세심판원의 전자심판 비율을 보면, 2020년 23.7%에서 2024년도 44.2%로 증가하여,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건 접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2) 「국세기본법」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조세심판 중 전자심판 접수건수〉

연도	총 접수건수	전자심판 접수건수	전자심판 비율
2020	12,795	3,037	23.7%
2021	13,025	3,214	24.7%
2022	10,373	3,235	31.2%
2023	16,781	3,842	22.9%
2024	9,811	4,341	44.2%

(자료: 조세심판원)

□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우편요금 집행현황을 보면, 전자심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매년 9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심판원 우편요금 집행액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우편요금 집행액	93,327	101,942	92,271

(자료: 조세심판원)

□ 이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한 심판청구서 접수 절차까지만 전자적 방식이 활용되고,
이후 절차에서는 비전자적 방식이 적용되어 조세심판 관련 서류의 대부분을 등기 또는 일반우편을 활용해 청구인 및 처분청에 송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조세심판 관련 우편 송부대상 및 송부방식〉

우편 송부대상	송부사유	송부내용	송부방식
청구서 부분	국세기본법 제69조제3항 ²³⁾	우편, 전자로 접수된 심판청구서 부분을 처분청에 송부	비전자(등기) ²⁴⁾
답변서	국세기본법 제69조제6항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비전자(일반우편)
항변서 및 추가답변서	국세기본법 제71조제3항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를 처분청에 송부 및 추가 답변서 청구인에게 송부	처분청 : 전자(공문) 청구인 : (비전자)등기
결정서	국세기본법 제78조5항 ²⁵⁾	심판결정문을 청구인, 처분청에 송달	비전자(등기)
조세심판관 지정 및 변경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해당 사건의 심판관 지정·변경 통보	비전자(일반우편)

(자료: 조세심판원)

□ 즉,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였다고는 하나, 심판청구서 접수 외의 대부분의 절차가 비전자적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 비용 절감, 사건처리의 신속성²⁶⁾ 등 전자심판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임.

23) 「국세기본법」 제69조(청구 절차)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분을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4) 2025년 5월부터는 청구서의 전자접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전면 전자문서로 송부하고 있음

25) 「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 절차) ⑤ 심판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밝혀 해당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6) 참고로, 2024년도 조세심판 처리 현황을 보면, 총 처리대상 중 법정기한(90일) 내 처리 사건의 비율은 35.3%임.

처리대상 건수	처리건수	법정기한(90일) 내 처리	법정기한(90일) 초과	이월 건수
13,356건	10,178건 (100.0%)	3,596건 (35.3%)	6,582건 (64.7%)	3,178건

- 현재와 같이, 비전자적 방식으로 조세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있는 것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조세심판 결정서 등의 전자 송달 가능성과 그 효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반면, 「행정심판법」은 2010년 전부개정을 통해 전자 송달에 대해 서면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고,²⁷⁾ 「특허법」 역시 1998년부터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²⁸⁾

27) 「행정심판법」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서면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한 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2조·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⑥ 위원회,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28) 「특허법」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조세심판원은 전자심판을 포함한 홈페이지 및 내부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매년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완전한 전자심판제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국민 편의성 제고, 예산 절감,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 등을 위한 전자심판제도 내실화를 위해 전자 송달 효력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²⁹⁾: 국정과제 점검회의 운영 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는 대통령 공약에 기반하여 수립된 국정과제에 대해 각 부처 대상으로 체계적인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정부 정책의 수행동력을 제고하고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억 4,700만원 중 2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77	-	70	247	235	-	12	197

(자료: 국무조정실)

29) 세부사업: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7031-301)

2) 검토의견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에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한 국정과제 점검회의 비용이 계상되어 있음. 2024회계연도의 경우 일반수용비 등으로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존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다른 사업 및 비목으로부터 전용·조정 등을 거쳐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를 위해 2022년의 경우 4,100만원, 2023년의 경우 5,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여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개최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아 매년 다른 비목 또는 다른 세부사업으로부터 전용·세목조정을 통해 충당하였음.

〈2022~2024년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현황〉

연도	점검회의 개요		예산 관련	
	일시	장소	예산액	집행액
2022	12. 15	영빈관	51	41
2023	11. 30	경기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락’	58	58
2024	4. 2	정부세종청사	33	120
	4. 4	용산 대통령실		

(자료: 국무조정실)

-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동일한 사업 내에서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예산 중 각각 1,000만원, 4,0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

였고, 2024년의 경우 기본경비 사업에서 7,000만원을 전용하고 동일한 사업 내에서 5,0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였음.

〈2022~2024년 국정과제 점검회의 관련 이·전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2. 12. 5.)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임차료 (210-07)	1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일반용역비 (210-14)
세목조정 (2023. 11. 23.)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임차료 (210-07)	1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일반용역비 (210-14)
		일반수용비 (210-01)	30		
전용 (2024. 4. 1.)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7011-250)	일반수용비 (210-01)	7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일반용역비 (210-14)
세목조정 (2024. 4. 1.)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일반수용비 (210-01)	5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일반용역비 (210-14)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해 과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매년 국정과제 성과보고 행사를 담당하였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구가 없어 국무조정실에서 국정과제 성과보고회를 전담하였고, 대통령 행사의 특성상 행사의 내용·규모·진행방식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하였다는 입장임.

○ 지난 정부가 2022년 출범하여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방향이 연말에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2023년 예산안을 편성·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예산을 국무조정실 소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세목조정이 발생한 부분은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지난 정부 3년차인 2024년에도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세목조정 및 전용 증액을 통해 해당 행사를 수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2025년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주체 및 행사 내용·규모 등을 조속히 확정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한 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³⁰⁾: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사업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사무·운영 지원을 위해 설치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임.

〈2024회계연도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단위: 백만원)

2024년									2025년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88	88	-	-	481	569	523	-	47	537

(자료: 국무조정실)

-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동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었음.³¹⁾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종전 법률에 따라 2019년 2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5년간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월 법률 개정³²⁾을 통해 그 활동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2026년 2월 14일까지 활동할 예정임.

30) 세부사업: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7032-305)

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32)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7년간 존속한다. <개정 2024. 1. 23.>

2) 검토의견

- ☐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최초 설치된 2019년도부터 별도의 위원회 홈페이지(www.cleanair.go.kr)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관리용역비(210-15) 2,200만원을 집행하고 있음.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210-15)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2	22	22	22

(자료: 국무조정실)

- ☐ 동 위원회 홈페이지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관련 정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① 위원회 소개, ② 미세먼지 관련 정보, ③ 미세먼지 현황, ④ 정보자료(보도자료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그런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위원회 소개’ 외의 기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등의 정보내용과 중복되며, 제공되는 콘텐츠의 대부분이 환경부 등 다른 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수집해 전달하는 형태임.

자체 생산한 정보인 ‘위원회 소개’의 경우에도 위원회 활동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회의 일정 및 안건목록과 회의사진만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구성〉

위원회 소개	미세먼지란	미세먼지현황	정보자료
위원 구성 및 활동소개	환경부 미세먼지종합포털,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정보와 유사	에어코리아 (한국환경공단) 연결	환경부 등 다른 부처의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가 대부분

-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정책결정 기능이 없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이고, 자문위원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용 등은 국무조정실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할 수 있을 것임.
- 국무조정실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 자체 생산 콘텐츠가 거의 없어 정보제공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 예산 상황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유지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4. 규제개혁위원회 운영³³⁾: 규제혁신전략회의 집행관리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 억제를 통해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및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7억 5,900만원 중 17억 1,200만원(97.3%)이 집행되고, 4,700만원(2.7%)은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759	-	186 △186	1,759	1,712	-	47	1,989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매년 이 사업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규제혁신전략회의”는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공론화하여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는 규제혁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비상설 회의체)로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기업·경제단체 및 전문가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함.³⁴⁾

33) 세부사업: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34)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2024 규제개혁백서』, 2025., p.32.

○ 국무조정실은 2022년 제1차 회의 이후 2024년까지 총 7차례의 규제 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는데, 2024년에는 3차례(제5차~제7차)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위한 행사를 위하여 총 3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실적〉

구분	일시	장소	회의내용
제5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024. 1. 22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	단말기유통법 폐지, 웹콘텐츠·영세서점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등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024. 2. 21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비수도권 그린벨트(GB) 규제혁신, 농지이용규제 개선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024. 11. 28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업·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개선

(자료: 국무조정실)

〈2024년도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행사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액	예산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비고
일반수용비 (210-01목)	96	△30	66	66	◦ 내역사업 간의 예산 조정
임차료 (210-07목)	6	12	18	18	◦ 내역사업 간의 예산 조정
일반용역비 (210-14목)	160	150	310	303	◦ 규제혁신전략회의 행사 규모 확대 및 회의방식 변경을 위한 세목조정 (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

(자료: 국무조정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2024년 총 3차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행사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총 2건의 용역계약을 동일한 행사 대행사와 체결하였음.

〈2024년도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용역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회의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방법	수의계약사유
제5차 · 제6차	24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2024. 1. 17. ~ 2024. 12. 20.	152 (변경: 263)	A업체	제한경쟁 → 수의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제7차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2024. 1. 17. ~ 2024. 12. 20.	38	A업체	제한경쟁 → 수의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자료: 국무조정실)

□ 먼저, 국무조정실은 2024년 1월 “24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업체는 이 계약에 근거하여 총 2차례의 행사³⁵⁾를 운영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2023년 12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 총 50명이 참석하여 부처 안건발표 및 전문가 토론 형태로 진행되는 행사를 연간 총 4회 개최할 계획으로 1억 6,0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 입찰공고를 개시하였으나, A업체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2024년 1월 이 업체와 1억 5,2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35) 제5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 그런데, 행사규모가 100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행사방식도 전국에 생중계되는 토론회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획 대비 오랜 준비 기간과 많은 인력, 추가적 장비 투입이 필요하게 되어 2024년 7월 과업내용과 계약금액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월과 4월 국무조정실과 A업체 간의 합의서가 작성되었음.
- 이후 국무조정실은 A업체에 변경된 계약금액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당초 계약(연간 4차례)과 달리 2차례의 행사 운영으로 이 계약의 이행은 종료되었음.

〈제5차·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경과〉

일시		집행경과	비고
2023년	12. 6.	공고 게시	
	12. 27.	개찰 → 단독응찰로 유찰	
2024년	1. 17.	계약체결 (152백만원)	
	1. 22.	제5차 규제혁신전략회의	
	1. 29.	변경 계약 사전 합의서	◦ (세부과업) <u>참석 규모 확대(50→100명)</u> 및 <u>생중계로 인한 행사기획</u> 및 <u>무대 제작물 설치</u> 등 ◦ (계약금액) 행사 완료 이후 실비 정산
	2. 21.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4. 26.	변경 계약 합의서	◦ (세부과업) “변경 계약 사전 합의서”의 내용과 동일 ◦ (계약금액) <u>262,764,590원</u>
	5. 14.	변경계약 적정성 검토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결
	7. 10.	변경계약 체결 (152백만원→263백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 다음으로, 국무조정실은 2024년 11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계약을 “24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계약상대방과 동일한 A업체와 체결하였으며, A업체는 이 계약에 근거하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행사를 운영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2024년 10월 4,4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 입찰공고를 게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A업체의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11월에 이 업체와 3,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A업체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행사를 준비·운영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이 12월 용역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이 계약의 이행은 완료되었음.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경과〉

	일시	집행경과	비고
2024년	10. 21.	공고 게시	
	11. 1.	개찰 → 단독응찰로 유찰	
	11. 8.	계약체결 (38백만원)	
	11. 28.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자료: 국무조정실)

2) 검토의견

(1)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선금금 집행 부적정

□ 「국고금 관리법」 제26조³⁶⁾은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 선금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령상 선금금 지급한도는 계약금액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100%)이나,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급한도를 100%까지 허용하고 있음.

□ “선금금”은 계약 이행의 초기 단계에서 계약의 착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상의 과업 중 완성된 부분(기성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성금”³⁷⁾과 구별되는 개념임.

36)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선금과 개산금)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概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금)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확대*

* ‘24.6.30.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는 기성금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³⁸⁾하고 있는데, 이는 선급금의 용도를 기성금과 구분하여 계약 착수준비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24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계약을 통하여 제5차 및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완료한 2024년 2월 이후 시점인 3월에 계약금액의 80%인 1억 2,200만원의 선급금을 A업체에게 지급하였음.

○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당초 계약상 연간 4차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A업체가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24년 3월 기준 다음 규제혁신전략회의의 개최 여부나 구체적인 계획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이 계약을 통하여 추가로 규제혁신전략회의의 준비·운영을 위한 과업이 수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선급금의 집행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집행이었던 것으로 보임.

제58조(대가의 지급) ③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38)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가사 후속 용역계약의 착수를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두차례의 규제혁신전략회의(제5차·제6차)가 종료된 상황에서 기성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전체 계약금액(1억 5,200만원)을 기준으로 선급금의 규모를 산정한 것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5항³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향후 계약의 잔여 이행분이 불확실한 경우 선급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9)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예산의 집행관리 부적정

□ 먼저, 국무조정실은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의 행사장 대관료를 해당 장소를 제공한 자가 아닌 용역업체(A업체)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국무조정실은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행사장 대관을 위한 비용을 임차료(210-07목) 예산으로 A업체에게 400만원 집행하였음.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행사 관련 지출현황〉

(단위: 원)

지출일자	지출금액	건명	수령인명
2024. 3. 29.	4,081,000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행사장 대관료	A업체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국무조정실이 해당 장소를 제공하는 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행사 용역업체인 A업체에게 지급한 것은 지출관이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리법」 제22조⁴⁰⁾를 위반한 것임.

- 국무조정실이 대관료를 일반용역비(210-14목)이 아닌 임차료(210-07목)로 지급한 것은 행사장을 용역업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40)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 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직접 임차하기 위한 취지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A업체에게 지급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이처럼 위탁업체를 거쳐 임차료를 집행하게 되는 경우 용역업체에게 수수료·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에 따른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⁴¹⁾

□ 한편, 국무조정실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시 게시하였던 과업내용을 축소하고, 해당 과업을 분리하여 별도 건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국무조정실은 2024년 10월에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게시하였음.

- 해당 입찰공고 시 게시된 「제안요청서」에는 행사 기획 및 사전 준비, 행사 홍보, 행사 현장 운영 및 관리, 오찬 및 케이터링 관리, 사후 정리, 행사 결과물 제출 등 과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 중 행사 기획 및 사전 준비사항에는 시스템 및 기자재 설치 등 행사장 조성, 현수막 등의 제작·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41) 실제로, 국무조정실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행사장을 대관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에게 기업 이윤(6%)과 부가세(10%)를 추가로 지급하였음.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입찰공고 개요〉

구분	주요내용
공고명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공고일	2024. 10. 21.
입찰서 접수	2024. 10. 30. ~ 2024. 11. 1.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4. 12. 20. 까지
예산액	금 44,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 과업내용	○ 행사 기획 및 사전 준비 - 행사 관련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행사장 섭외 및 진행 시나리오 마련 - 포디움·좌석 등 배치, 물품 준비, <u>시스템 및 기자재 설치 등 행사장 조성</u> - <u>현수막·배너·프로그램북·네임택 등 디자인, 제작, 배부 또는 설치</u> - 기타 제반 사항 ○ 행사 홍보 (상세 내용 생략) ○ 행사 현장 운영 및 관리 (상세 내용 생략) ○ 오찬 및 케이터링 관리 (상세 내용 생략) ○ 사후 정리 (상세 내용 생략) ○ 행사종료 후 행사 결과물 제출 (상세 내용 생략)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국무조정실은 입찰공고 시 이 계약 예산액을 4,400만원으로 산출하였는데, 예산산출내역서상에는 시스템 관련 경비와 백드롭 등 무대 제작물 등의 경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음.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예산 산출내역서>

항목		내용	금액(원)	산출내역
기획/연출	기획료	기획, 프로그래밍, 키비주얼 디자인 등 (2D/3D 디자인포함)	1,000,000	21000,000원×1식
인건비	책임연구원	행사총괄	1,398,682	6,993,408원×1인×1개월×20%
	연구원	행사운영	804,368	5,362,452원×1인×1개월×15%
	연구보조원	행사보조	1,075,385	3,584,618원×2인×1개월×15%
	운영인력	행사세팅 및 진행요원	600,000	150,000×4인
경비	시스템	영상·음향·전력 시스템	7,000,000	7,000,000원×1식
	무대 제작물	백드롭, 포디움, X배너 등	6,000,000	6,000,000원×1식
	행사장 비품 및 구성	명패, 회의자료 등	1,500,000	1,500,000원×1식
	행사물품	노트북, 프린터, 멀티탭 등	1,000,000	1,000,000원×1식
	도시락 및 다과	도시락 및 다과	1,500,000	1,500,000×1식
	현장 경비	교통, 식비, 숙박 등	1,000,000	1,000,000×1식
	운송/설치/철거	행사 시스템 운송/설치/철거 등	600,000	600,000×1식
소계(A)			23,478,435	
일반관리비 (B=A×8%)			1,878,275	
기업이윤 {C=(A+B)×10%}			2,535,671	
부가가치세 {D=(A+B+C)×10%}			2,789,238	
총계 (E=A+B+C+D)			30,000,000	(십만단위 절사)

(자료: 국무조정실)

- 이 입찰은 A업체가 단독응찰하여 유찰되었으며, 이에 국무조정실은 A업체와 계약금액 3,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한편, 국무조정실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종료 후 A업체에 용역 계약 완수금으로 일반용역비(210-14목) 3,800만원을 집행한 외에도, 백드롭 제작 명목으로 일반수용비(210-01목) 700만원, 시스템 임차료 명목으로 임차료(210-07목) 688만원 등 총 1,388만원을 별도로 추가 지출하였음.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행사 관련 지출현황〉

(단위: 원)

지출일자	세목	지출금액	건명	수령인
2024. 12. 26.	일반용역비(210-14)	38,000,000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완수금	A업체
2024. 12. 30.	일반수용비(210-01)	7,000,000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백드롭 제작	A업체
2024. 12. 30.	임차료(210-07)	6,880,000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시스템 임차료	A업체

(자료: 국무조정실)

-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①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을 기본으로 행사 전까지 쌍방이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고, ② 행사장 시설물 및 기타 행사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제안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실행 전에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된 제안요청서 일반사항⁴²⁾에 따라 용역계약상의 과업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42) 제안요청서(자료: 국무조정실)

II. 과업내용

1. 일반사항

-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하는 과업 내용을 기본으로 행사 전까지 쌍방이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며, 대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고,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행사장 시설물 및 참가자, 수량, 기타 행사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제안서상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실행 전에 국무조정실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양측 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그러나, 과업내용의 변경은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의 발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과업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예까지 과업을 변경한 후 과업에 대한 대가를 별건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공고상의 과업내용, 예산금액 등이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입찰공고 시에 제시된 과업내용과 예산액을 신뢰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잠재적 입찰참가자 입장에서는 입찰공고 시 포함되어 있는 과업을 개찰 이후에 제외하고, 제외된 과업에 대해서 별도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관련 법령의 위반, 과도한 과업내용의 변경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예산의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⁴³⁾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ODA 추진체계 공고화, 체계적·실효적인 ODA 전략·정책 마련 및 사업 심사·조정, 유·무상 및 양·다자 사업 연계, 평가 등을 통해 ODA 통합·조정 강화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9억 7,200만원 중 27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400만원(6.2%)을 불용함.

〈2024회계연도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2,972	-	5 △5	2,972	2,788	-	184	5,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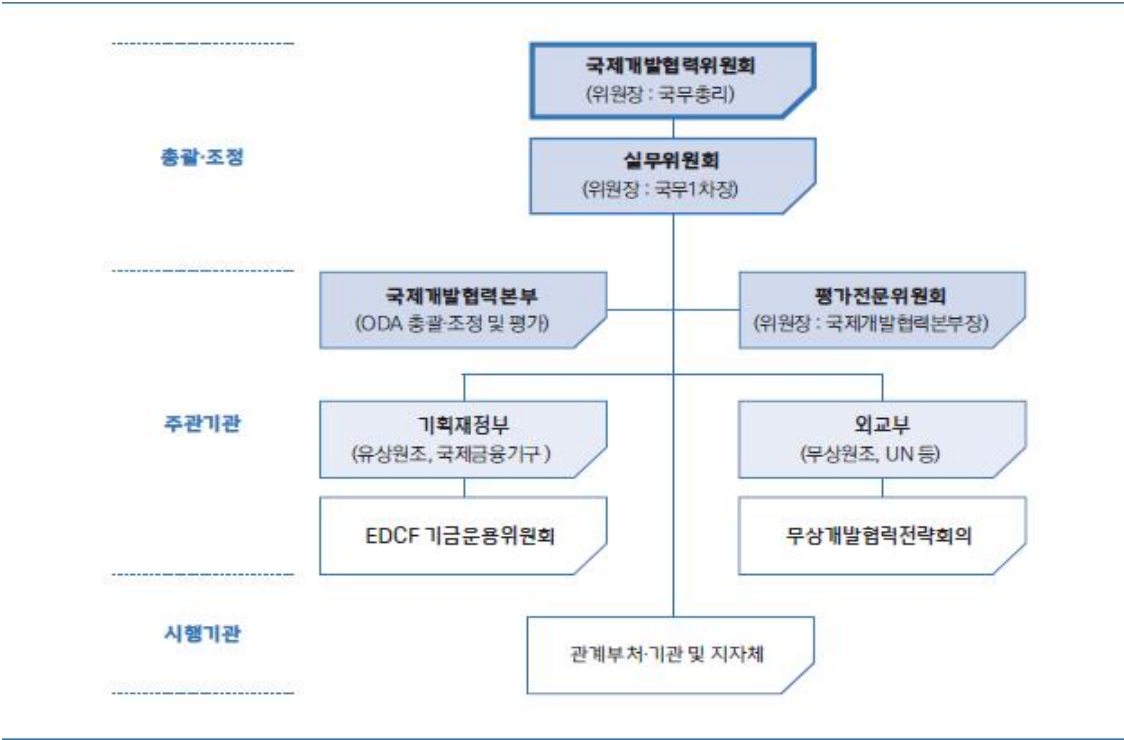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총괄·조정기관-주관기관-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구성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괄·조정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정책기구임. 또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

43) 세부사업: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7035-306)

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사업 발굴, 추진, 평가를 위한 심사·점검을 실시하고, 분야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함.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⁴⁴⁾>



○ ODA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은 ‘시행기관’이라고 하는데, 2024년 기준 총 46개의 시행기관이 ODA 사업을 수행하였음. 주요 시행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용과 관리를 위탁받아 유상원조를 수행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은 외교부장관의 감독 아래에 무상협력 사업을 시행함.

44) 「2021-2023 ODA 백서」, p.51

□ 우리나라의 2024년도 확정 예산기준 총 ODA 규모는 6조 2,629억원임.

<연도별 ODA 규모>

(단위: 십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ODA(십억원)	3,048.2	3,200.3	3,427.0	3,754.3	3,938.3	4,777.1	6,262.9
양자간원조 비중(%)	2,387.7 (78.3)	2,493.8 (77.9)	2,775.0 (81.0)	2,926.1 (77.9)	3,115.7 (79.1)	3,673.9 (76.9)	5,128.2 (81.9)
유상원조 비중(%)	1,058.1 (44.3)	1,141.2 (45.8)	1,184.9 (42.7)	1,258.2 (43.0)	1,230.5 (39.5)	1,503.0 (40.9)	2,032.0 (39.6)
무상원조 비중(%)	1,329.6 (55.7)	1,352.6 (54.2)	1,590.1 (57.3)	1,667.9 (57.0)	1,885.2 (60.5)	2,170.9 (59.1)	3,096.2 (60.4)
다자간원조 비중(%)	660.5 (21.7)	706.5 (22.1)	651.9 (19.0)	828.2 (22.1)	822.6 (20.9)	1,103.2 (23.1)	1,134.7 (18.1)

(자료: 국무조정실)

2) 검토의견

(1) 무상보수기간 중 ‘ODA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과다지급

□ 국무조정실은 매년 ‘ODA 홈페이지’ 및 ‘ODA 정보포털’⁴⁵⁾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210-15)를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ODA 홈페이지’ 및 ‘ODA 정보포털’ 유지관리 용역을 통합발주하여 ○○소프트와 총 3억 8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함.

○ ‘ODA 홈페이지’ 및 ‘ODA 정보포털’의 유지관리와 관련해, 종전에는 두 사업을 각각 발주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두 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단일 계약하고 있음.

○ 또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ODA 홈페이지’ 및 ‘ODA 정보포털’ 유지관리 용역의 추정가격⁴⁶⁾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2억 9,100만원으로 동일하며, 그 계약상대방은 2021년 이후 동일한 업체임.

45) ‘ODA 홈페이지’는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ODA 정보포털’은 ODA사업 기관용 정보 포털임.

4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총 계약기간에 대해 추정된 금액 등으로 산정된 가격을 말함.

〈ODA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10-15)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추정가격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2021	ODA 정보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182	합계 291	196	합계 313	2021.1.1-12.31	○○소프트
	ODA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109		117		2021.1.1-12.31	○○소프트
2022	ODA 정보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182	합계 291	196	합계 313	2022.1.1.-12.31	○○소프트
	ODA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109		117		2022.1.1.-12.31	○○소프트
2023	ODA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91		315		2023.1.1.-12.31	○○소프트
	ODA 홈페이지 개편	448		443	합계 531	2023.5.16.-12.12	○○소프트
	ODA 홈페이지 개편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		88		-	-
2024	ODA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91		308		2024.1.1.-12.31	○○소프트
2025	ODA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91		308		2025.1.1.-12.31	○○소프트

*ODA 정보시스템 = ODA 정보포털 + ODA 홈페이지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국무조정실은 유지관리 해오던 정보시스템 중 ‘ODA 홈페이지’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홈페이지 개편 용역을 실시하여, 시스템개발비⁴⁷⁾로 4억 4,300만원을,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⁴⁸⁾로 8,800만원을 집행하였음.

국무조정실은 2023년 ‘ODA 홈페이지’ 개편 기간 중에 2024년도 ‘ODA 홈페이지’ 및 ‘ODA 정보포털’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통합발주하였는데,⁴⁹⁾

47) 일반연구비(260-01)

48) 자산취득비(430-01)

49)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업 전 연도 하반

그 계약상대방은 ‘ODA 홈페이지’ 개편을 담당한 업체이며, 총 3억 800만원에 두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하였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⁵⁰⁾는 국가기관 등과 소프트웨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ODA 홈페이지’ 개편사업의 제안요청서⁵¹⁾에도 1년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즉, 홈페이지 개편 사업의 계약상대방은 홈페이지 개편이 마무리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해당 홈페이지와 관련된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할 책임이 있음.

- 이와 같은 법률과 제안요청서 규정이 있음에도, 국무조정실은 2024년도 ‘ODA 홈페이지’ 및 ‘ODA 정보포털’ 유지관리 용역의 계약기간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추정가격을 예년과 동일한 2억 9,100만원으로 표시하여 통합발주하였는데,

기 중에 계약을 발주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

5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분리발주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계약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51) ‘ODA통합누리집 개편 제안요청서’ 중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해당 용역의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그 유지관리 대상에 ‘ODA 홈페이지’ 및 관련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도에 개편된 ‘ODA 홈페이지’와 관련해 그 하자보수는 홈페이지 개편 사업자가 1년간 담당하게 된다는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결국, 2024년 12월까지 무상하자보수가 진행되어야 하는 ‘ODA 홈페이지’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2024년도에 집행한 관리용역비(210-15)는 인건비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로서 ‘하자보수’와는 무관하고,

2024년도 정보시스템 계약상대방⁵²⁾은 홈페이지 무상하자보수 기간을 인지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2024년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계약금액(3억 800만원) 중 홈페이지 하자보수 관련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함.

52) 2023년도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담당한 사업자와 같은 사업자임.

□ 그러나, 동 사업 제안요청서 중 기능 요구사항에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에러 수정’,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등 하자보수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⁵³⁾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하자보수는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한 오류 및 결함을 수정하여 제거하는 업무로, 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 트랜잭션 기능수행 중 발생한 오류 및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합한 정보처리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수정하는 활동”⁵⁴⁾을 말하므로, 하자보수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임.

□ 국무조정실은 ‘ODA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한 무상유지보수 기간임을 고려하지 않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유지관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음.

53) 국무조정실 ‘2024년 ODA IT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계약 제안요청서 중 기능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결함수정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시스템 결함을 수정하여 보완
	세부 내용	1.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2.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3. 평균 응답시간 단축,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산출정보		결함처리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4)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2024년 개정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p.49

(2) 법률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수정 절차 준수 필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민간전문가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임.⁵⁵⁾

○ 위원회는 전체 사업의 유형·대상지역·대상분야 간 비중을 고려하여 5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함.

□ 위원회는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한 1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⁵⁶⁾하고, 필요한 경우 이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음. 또한, 위원회가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해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이 확정된 종합

5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56)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국무조정실은 각각의 ODA 사업에 대해 ODA 적격성, 수원국과의 협의 여부, 대외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① 주관기관의 분야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함으로써 다음 연도 ODA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②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음 연도에 시행이 가능한 ODA 사업목록이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침. ③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ODA 사업은 확정예산 기준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되며, ④ 정부는 다음 연도 ODA 사업목록을 연도별 ODA 종합시행계획에 첨부하여 공개하고 있음.(「2021-2023 ODA 백서」, p.56-57)

시행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⁵⁷⁾

○ 이 종합시행계획은 시행기관의 ODA사업 실시 근거가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개발협력기획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국회에서 확정되었으나,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불용처리한 바 있는 등 종합시행계획은 각 시행기관의 ODA사업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런데, 종합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한 확정 종합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1~2월경 국회에 보고되었지만, 이 종합시행계획의 수정과 관련된 보고는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종합시행계획 국회 보고 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종합시행계획 (확정)	○	○	○	○
종합시행계획 (수정)	×	×	×	×

5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대해서만 국회 보고의무를 부과한 반면, 2020년에 전부개정된 법률에서는 위원회에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고, 연도 중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 종합시행계획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신·구 조문대비표 〉

개정 전	2020. 5. 26., 전부개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u>종합시행계획</u> (이하 생략)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u>종합시행계획</u>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u>종합시행계획</u> 을 <u>확정</u> 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u>확정된 종합시행계획</u> 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u>종합시행계획</u> 을 <u>확정 또는 수정</u>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고,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은 ① 중대한 사업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기관이나 주관기관의 개별적인 판단이 아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통합·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②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지침(내부지침)’을 근거로,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또는 종합시행계획에 반영은 되었으나 사업대상국이나 사업예산을 크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외교부 및 기재부)이 해당 사업 변경을 승인하도록 하고⁵⁸⁾, 이러한 사업변경 내역은 다음연도 위원회 개최 시에 사후보고한 후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2025년 2월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에 따르면, 2024년도 ODA 사업 중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은 총 83건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철회 18건, 사업대상국 변경 17건, 총사업비 20%초과 변경 18건, 기타 30건임.

□ 종합시행계획은 1년 단위 사업계획이므로 해당 연도 사업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연내에 이를 반영해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국무조정실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중대한 변경사항을 ‘차년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한 것임.

□ 5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종합시행계획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유형·대상지역·대상분야 간 비중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고, 시행기관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이미 설정된 계획도 수정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를 결정해야 할 것임.

58) 중요사항의 경우 국무조정실과 사전 공유

□ 정부는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도 확정 예산기준 총 6조 2,62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ODA사업의 특성상 국회가 그 사업의 적절성 등을 적기에 평가할 수 없으므로 ODA 규모 확대에 걸맞는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 국무조정실은 ‘위원회의 ODA 총괄·조정기관으로서의 지위 강화’ 및 ‘ODA사업 투명성·책임성 강화’와 같은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해, 신규사업 추진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도 내에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하고, 이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6.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⁵⁹⁾: 민간위탁사업자의 사무편람 승인 및 위탁사무 감사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는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 재정비·확충, 청년정책 분석·연구 및 청년과의 소통·참여 활성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9억 8,400만원 중 81억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2%)되고, 3억 5,300만원이 이월, 4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8,984	-	-	8,984	8,191	353	440	7,034

(자료: 국무조정실)

59) 세부사업: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

2) 검토의견

-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에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2024회계연도에서는 민간위탁비 2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20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 사업이 신설된 2023년부터 공모를 통해 매년 재단법인 청년재단을 중앙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중앙청년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중앙청년지원 센터 지정	집행비목	예산액	집행액
2023	재단법인 청년재단	320-02 민간위탁사업비	1,739	1,543
2024			2,270	2,072

(자료: 국무조정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민간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갖추어야 하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함.

○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무편람이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관,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를 의미⁶⁰⁾함.

-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이와 같은 사무편람을 갖추고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문서화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차질을 방지하려는 취지⁶¹⁾임.

○ 한편,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⁶²⁾.

□ 국무조정실은 위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무편람이 적정하게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승인하고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수탁기관이 작성하여 승인 받은 사무편람의 내용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갖추도록 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고, 매년 1회 이상의 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6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 참조

6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이 승인한 수탁기관의 사무편람을 보면, 문서관리, 재무 회계, 계약업무, 자산 및 물품관리 등 수탁기관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 규정과 관련된 사항만 포함하고 있을 뿐,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관, 처리절차,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부재함.

〈중앙청년지원센터 사무편람(일부 발췌)〉

중앙청년지원센터 사무편람

제정 : 2024.01.02.
개정 : 2024.03.15.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 근거 및 명칭) 본 시설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4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명칭은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운영법인"이라 한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규, 운영법인의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센터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법인의 대표자 및 센터장이 정한다.

제4조(소재지) 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관정빌딩)로 한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센터 업무 종합적 관리·지원·평가
2. 지역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3. 지역센터 종사자 역량·권익 강화사업 개발·운영
4. 국내외 청년정책 정보의 총괄적 수집·분류·제공
5.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연구·조사
6.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지원·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장 운영조직

제6조(조직과 정원) ① 센터는 센터장과 직원을 두어 운영한다.

② 직원의 직위는 선임, 매니저로 구분한다.

③ 센터의 상근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한다.

- 1 -

제4장 재무회계

제1절 총 칙

제24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예산 및 회계의 총괄) ① 센터장은 예산 및 회계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예산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회계책임자는 모든 회계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제26조(회계기록의 보존) ① 센터의 모든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이를 기장(회계업무 진산화에 따른 데이터파일과 출력파일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기장의 근거자료로서 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기록문서의 보존기간은 당해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27조(출납기관) 회계 연도에 속하는 센터의 수입과 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제24조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2 절 예산 및 결산

제28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센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편성 기준) 센터의 예산편성은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등으로 하되, 운영법인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 및 경비의 충당) 센터는 제5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모금 또는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단, 수익사업의 경우 운영법인의 결제를 득한 후 국무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센터의 예산은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

(자료: 국무조정실)

-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매년 3회의 정례보고회⁶³⁾ 시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는 입장이나, 정례보고회는 수

63) 국무조정실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3회의 정기보고회(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정기보고회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사업계획, 사업 진행 상황, 최종 사업결과물 등을 보고하는 형식임.

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대해 위탁사업의 계획과 진행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일반적인 감사의 성격과 절차에 비추어볼 때 적정하게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절차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국무조정실의 자체 감사 절차를 규정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르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계획을 사전에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동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 감사계획을 통보하거나 감사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 관련 절차가 부재하였음.
- 참고로, 국무조정실 소관 예산 중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서 수행하는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탁사무별로 담당부서, 주요 업무 처리 절차 등을 기재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고 있고, 감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정부업무평가지원 위탁사업 사무편람(목차) 및 감사 결과〉

〈 목 차 〉 I. 사업 개요 1 II. 특정평가 지원 4 1. 업무 개요 및 담당 부서 4 2. 주요 업무 5 1) 협업과제 선정 지원 5 2)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 선정 지원 6 3) 전문가평가단(협업 및 주요정책과제) 운영 지원 8 III. 개별평가 관리 지원 10 1. 업무 개요 및 담당 부서 10 2. 주요 업무 11 1) 개별평가 제도관리 및 심층분석 업무 지원 11 2) 성과확산 등 환류기능 강화 지원 13 3) 개별평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14 IV.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심층점검 지원 15 1. 업무 개요 및 담당 부서 15 2. 주요 업무 17 V. 수시현안과제 분석 지원 19 1. 업무 개요 및 담당 부서 19 2. 주요 업무 20 VI. 각종 평가 사전검토 21 VII. 부록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시행령 22	민간위탁기관(정부업무평가 지원 위탁사업) 점검 결과 < '24.8.13(화), 평가총괄정책관실 > □ 점검 개요 ○ (근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6조 * △ (제14조)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 (제16조)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 ○ (목적)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탁사업 운영의 적정성 확보 ○ (대상기관·기간) 한국행정연구원(수탁사업자) / '23. 4. ~ '24. 6. ○ (점검실시일) '24. 7. 16. □ 점검 결과 ◆ (총평)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중대한 비위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업 관리 및 회계 처리에 일부 미흡 사항 확인 ⇒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 (인사) 정규직 겸직 인력의 위탁사무 참여율이 제안내용상 참여율에 미달, 연구조사원 인력 운용 관련 국조실과 사전 협의 미흡 등 ○ (예산) 일부 예산 집행 건명과 실제 집행 내용 간 불일치, 직원 여비 집행 시 출장 내용 확인 소홀 등 □ 향후 계획 ○ 미흡사항에 대한 현지조치 완료 → 차년도 이행결과 확인('25년 중)
---	--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중앙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 수행 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승인 및 위탁기관의 정기 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⁶⁴: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실적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은 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여 청년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4억 7,300만원 중 31억 7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4%)되고, 2억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청년정책통합 플랫폼 구축	3,473	-	-	3,473	3,173	200	100	1,958

(자료: 국무조정실)

64) 세부사업: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7035-324)

2) 검토의견

□ 국무조정실은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청년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던 ‘온라인 청년센터’를 2022년부터 이관하여 ‘온통청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해왔으며, 2024회계연도에서는 ‘온통청년’을 고도화하여 실시간·맞춤형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신규 구축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정책을 통합 제공할 수 있고, 청년 개인에게 맞춤형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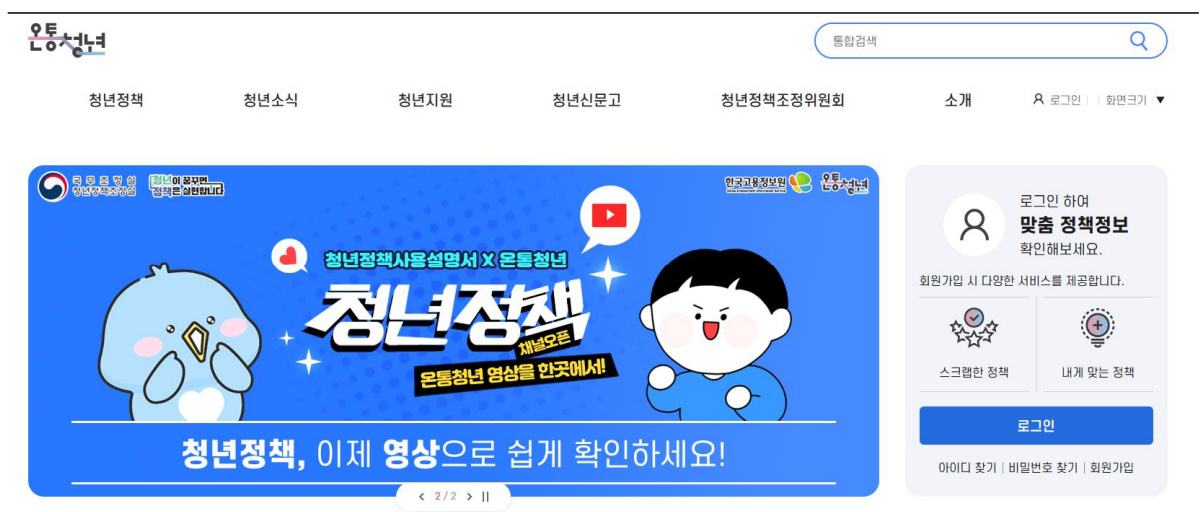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계획 개요〉

구분	(기존) 온라인 청년센터	(신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정책 정보	청년정책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책정보 중복·누락 발생, 데이터 현행화에 장기간 소요	청년정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중복·누락 없이 실시간 정책 데이터 수집 및 축적
서비스 제공	개인의 수요 및 여건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정책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정책 추천서비스 등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상담	상담원을 통한 분야별·심층 상담을 제공하나, 이력관리 부재	청년의 분야별 상담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피상담자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인프라	워크넷 서버 공동 활용, 기능 추가 및 개선에 한계	별도 클라우드 구축하여 기능 신설 및 개선을 위한 확장성 확보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⁶⁵⁾’를 수립하면서,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을 2024년과 2025년,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2024년에는 34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을 1차로 구축 완료하였음.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온통청년) 홈페이지 현황〉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예산안에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을 2차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 1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14억 8,800만원이 삭감⁶⁶⁾된 바 있음.

-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통해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1차 구축사업의 운용실적 및 미비점 등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 제2차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함께 채택하였음.

65) ISP :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정보화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ISP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66)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종합플랫폼 2차 구축예산 중 삭감되지 않은 1억원을 통해 온통청년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정책 플랫폼 간 연계사업을 진행하였음.

□ 이상의 부대의견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2024년도에 1차로 구축하여 2025년 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온통청년)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당초 국무조정실이 예상한 수준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 국무조정실은 2024년도 1차 구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청년정책 종합플랫폼 구축 시 청년정책 탐색비용 감소로 인하여 연 87.4억원에 해당하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연간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에 가입한 접속자수를 286만명으로 추계하고, 이들 청년이 청년정책을 검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20분 단축된다는 것을 전제로 절감되는 시간만큼을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계산한 것임.

〈청년정책 종합플랫폼 편익 산출 근거〉

※ 청년정책 탐색비용 감소로 인한 편익(연 87.4억원) 산출 근거

- 편익(약 87.4억/연) = 최저임금(9,160원) × 절감(95.4만시간=접속자수(286만명)× 단축시간(시간당 20분))
- 접속자수(286만명/연) : 청년인원 수(2021년 서울시 청년밀집 지역 기준-통계청) /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
- 단축시간(20분) : 유사사례(복지부 공공보건포털 구축 후 조회업무 단축시간 20분) 참조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러나,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이 신규 개설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방문자, 가입자 등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추계한 연간 접속자수(연간 286만명)에 비해 실적(7개월간 약 100만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정책 중 신청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가입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도 방문자의 1% 미만에 머무르는 수준임.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온통청년) 홈페이지 현황〉

(단위: 명)

구분	방문자	가입자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건수
2025. 1.	187,022	1,464	409
2025. 2.	85,459*	4,434	1,357
2025. 3.	162,964	5,292	1,457
2025. 4.	171,109	4,634	1,589
2025. 5.	123,096	4,263	1,464
2025. 6.	106,123	3,885	1,174
2025. 7.	163,680	5,324	1,877
합계	999,453	29,296	9,327

* 1. 24 ~ 2. 9 방문자 수의 경우, 집계 솔루션 미적용으로 집계불가

(자료: 국무조정실)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의 운영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부대의견에 따라 2025년도의 운영실적과 미비점을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8. 부패예방추진단 운영⁶⁷⁾: 훈령 개정을 통한 임시조직 활동 기한 연장 부적정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은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및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국민생활 밀접분야 중 감시가 소홀하거나 부패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에 대해 관계기관의 합동점검으로 부패·부조리를 시정·예방하는 부패예방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 7억 900만원 중 7억 500만원이 집행되었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09	-	33 △33	709	705	-	4	707

(자료: 국무조정실)

67) 세부사업: 부패예방추진단 운영(7036-311)

2) 검토의견

(1) 훈령 개정을 통한 임시조직 활동 기한 연장 부적정

□ 부패예방추진단은 2014년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부정부패 척결 관련 대책의 기획·분석·시행 및 공직부패 점검·관리를 추진하고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1호, 2014.8.13. 제정)」에 기반하여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한시 운영조직으로 신설되었음.

○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임시조직인 부패예방추진단이 신설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규정의 존속기한을 7회나 추가 연장하여 현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임.

〈부패예방추진단 활동기한 연장 현황〉

회차	시기	내용	활동기한
설치	2014.8.	부패척결추진단 설치	2015.7.31.
1차	2015.7.	활동기한 연장	2016.12.31.
2차	2016.12.	활동기한 연장	2017.12.31.
3차	2017.8.	활동기한 연장 및 명칭변경 (부패예방감시단)	2019.12.31.
4차	2019.12.	활동기한 연장	2020.3.31.
5차	2020.3.	활동기한 연장 및 명칭변경 (부패예방추진단)	2022.6.30.
6차	2022.1.	활동기한 연장	2024.12.31.
7차	2024.7.	활동기한 연장	2027.12.31.

(자료: 국무조정실)

□ 임시조직에 해당하는 부패예방추진단의 활동기한을 여러차례 연장하는 것은 「정부조직관리지침」 등 정부의 조직관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정부조직관리지침」(행정안전부 지침)⁶⁸⁾에 따르면, 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3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설치 근거에 명시⁶⁹⁾하고, 존속기한 경과 시에는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해당 수행기능을 종료시키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은 기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임시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사실상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국회는 과거 국무조정실 소관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임시조직인 부패예방추진단의 활동기한 연장이 부적절하므로, 이를 시정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시정요구사항이 조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68) 정부조직관리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행정안전부 지침

69) 불가피한 경우 2년 이내(훈령 이상의 법령에 근거한 경우 2년 이상)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부패예방추진단 활동기한 연장 관련 국회 지적사항〉

구분	시정요구사항
2020회계연도 결산	· 국무조정실은 연장된 운영 기한(2022년 6월) 도래 전까지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패예방추진단의 직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주의)
2021회계연도 결산	· 국무조정실은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추진단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직제 반영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2022회계연도 결산	· 국무조정실은 정부합동부패예방 추진단이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시정)
2023회계연도 결산	· 국무조정실은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추진단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운영방식을 조속히 결정할 것(제도개선)

○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국무조정실은 2025년 상반기에 부패예방추진단의 조직 운영 지속여부 및 중복 가능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채택한 바 있음.

- 다만, 국무조정실은 2025년 상반기 새 정부 출범으로 정규 직제화 등 조직개편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속히 부패예방추진단의 조직 운영 지속여부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뒤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국내여비 편성 부족으로 다른 비목 조정 문제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에는 부패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국내여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국내여비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다른 비목으로부터 조정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 2022년의 경우 일반수용비로부터 2,400만원,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일반수용비 등 4개 비목으로부터 각각 4,800만원, 3,800만원을 국내여비로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부패예방추진단 활동기한 연장 관련 국회 지적사항〉

연도	구분	예산액	조정내역		조정후 예산액
			증	감	
2022년	일반수용비 (210-01)	87,000 예비비(17,000포함)		△24,000	63,000
	국내여비 (220-01)	102,000 예비비(49,000포함)	24,000		126,000
2023년	일반수용비 (210-01)	60,000		△18,000	42,000
	공공요금 (210-02)	59,000		△4,000	55,000
	특근매식비 (210-05)	13,000		△6,000	7,000
	임차료 (210-07)	224,000		△20,000	204,000
	국내여비 (220-01)	105,000	48,000		153,000
2024년	일반수용비 (210-01)	49,504		△13,500	36,004
	공공요금 (210-02)	59,000		△4,000	55,000
	특근매식비 (210-05)	10,000		△6,500	3,500
	임차료 (210-07)	215,000		△14,000	201,000
	국내여비 (220-01)	130,000	38,000		168,000

(자료: 국무조정실)

○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패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내여비의 적정한 수준의 집행이 필요하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요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조정 등을 통해 국내여비를 추가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 국가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부 비목별 편성액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연례적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추진단의 존속을 전제로, 활동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비목별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1. 공통: 연구회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연구기관의 임원으로서 임기가 각각 3년인 원장 1명과 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⁷⁰⁾

○ 이 중 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8조의2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되 구체적인 임명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⁷¹⁾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43조에서는 연구기관의 감사는 ‘해당 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및 해당 연구기관이 추천한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의결을

70)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71)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② 연구회의 이사장은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의2(감사의 임명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임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거쳐 이사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⁷²⁾

□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회 포함 25개 기관(부설연구기관 제외)에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감사는 24명임.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감사 현황〉

기관명	감사	임명일	임기종료일
연구회	한경필	2024. 12. 13.	2027. 12. 12.
건축공간연구원	천명환	2020. 11. 20.	2023. 11. 19.(임기계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영재	2024. 11. 21.	2027. 11. 20.
국토연구원	김정훈	2023. 9. 21.	2026. 9.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승관	2024. 11. 21.	2027. 11. 20.
산업연구원	박홍서	2024. 12. 19.	2027. 12. 18.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원일	2023. 4. 27.	2026. 4. 2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성엽	2022. 12. 1.	2025. 11. 30.
통일연구원	정준희	2023. 11. 16.	2026. 11. 15.
한국개발연구원	김한석	2023. 4. 27.	2026. 4. 26.
한국교육개발원	민용식	2024. 11. 21.	2027. 11. 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충연	2024. 12. 19.	2027. 12. 18.
한국교통연구원	김지현	2021. 6. 14.	2024. 6. 13.(임기계속)
한국노동연구원	엄상민	2023. 2. 13.	2026. 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은숙	2021. 2. 1.	2024. 1. 31.(임기계속)
한국법제연구원	백경미	2021. 2. 22.	2024. 2. 21.(임기계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연심	2021. 7. 12.	2024. 7. 11.(임기계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미	2020. 9. 25.	2023. 9. 24.(임기계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진국	2024. 11. 21.	2027. 11. 2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종식	2024. 11. 21.	2027. 11. 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성춘	2021. 5. 3.	2024. 5. 2.(임기계속)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홍철	2024. 11. 21.	2027. 11. 20.
한국행정연구원	공석(2024. 10. 4. 임기종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임지봉	2022. 2. 28.	2025. 2. 27.(임기계속)
한국환경연구원	정복영	2024. 12. 19.	2027. 12. 18.

주: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8개 기관의 감사는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정관에 따라 후임자의 임명 전까지 계속하여 근무 중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72) 제43조(연구기관 감사의 선임) ① 연구기관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1. 해당 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기관
2. 연구회 및 해당 연구기관이 추천한 관련 단체

②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임감사 선임의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원장선임 절차를 준용한다.

□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기관마다 감사(監事)를 두지 않고 연구회에만 감사위원회를 두어 감사(監査)를 실시하고 있음.

○ 과거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들처럼 개별적으로 감사(監事)를 두는 구조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폐지하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이와 같은 정책 변경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임.

첫째, 개별 연구기관의 연구몰입 환경의 조성임. 즉, 종전의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할 경우 적극적인 면책을 통해 연구의식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예방 감사 중심의 감사 인력 운용과 함께, 감사원·연구회·기관 등 3단계 감사로 인한 연구자의 수감 피로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

둘째, 감사의 공정성 제고임. 연구기관 자체감사는 구성원 간 유대 관계나 업무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감사가 어렵고 감사 기법 도입 등을 통한 성과 창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셋째, 감사의 독립성과 자원의 효율성 추구임. 개별 연구기관에 소속된 감사와 원장에 의해 임명되는 감사 인력이 실시하는 자체

감사는 독립성 측면에서 취약하고, 연구회에 통합감사를 두어 각 연구기관에 분산된 감사 인력과 이에 소요되는 자원을 절감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매우 유사한 목적을 띠고 있고,⁷³⁾ 각각 국무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연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두어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감사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통합 감사조직을 통해 연구회 내 상시적인 감사조직을 구성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현 제도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별 연구기관의 감사 임명 지연에 따른 자체감사의 효능성 저하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음.

○ 아울러 감사처분은 합의제 조직인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두어 감사권의 일원화에 따른 연구회 이사장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는 한편,

73) 두 법의 목적은 매우유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감사를 폐지하고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감사조직을 연구회에 두는 만큼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함으로써 연구 몰입 환경의 조성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자체감사를 폐지하고 연구회에 통합 감사 기능을 두는 방안에 대하여 일부 연구기관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의사소통과 제도설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일부 연구기관들은 현 자체감사가 기관별·분야별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연구회에 통합 감사조직을 두면 개별 연구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일부 연구기관들은 통합 감사조직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제도를 변경할 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국무조정실 감사 등은 폐지함으로써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함.

□ 결국, 감사제도의 설계는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의 조성, 출연연구 기관 운용의 정합성·통일성, 감사의 공정성·효율성, 기관운영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2. 공통: 수의계약 비중 축소 및 규정 정비 필요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⁷⁴⁾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되 예외적으로 계약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의 계약이거나, 1억원 이하이더라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인 경우 등에는 참가자를 지정하여 경쟁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구회와 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2조제5항⁷⁵⁾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에서 일반경쟁을 계약의 원칙으로 하는 것은 자격이 있는 모든 자에게 입찰 참여 기회를 개방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을 통해 가장 유리한 가격과 조건을 제시하는 자와 국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며, 무분별한 수의계약이 유발할 수 있는 유착이나 부정청탁으로부터 계약체결의 객관성을 보장

74)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75)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하는 한편, 법 집행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 그러나 연구회와 연구회 소속 상당수의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법률의 취지에 벗어난 계약방식을 실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첫째, 연구회와 연구기관들은 대부분의 계약을 일반경쟁보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음.

○ 먼저, 기관의 2024년 한해 계약 건수 대비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건축연구원 98.1%, 한국교육개발원 96.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6.6%, KDI대학원 96.5%, 국토연구원 96.3% 등 상당수의 기관이 대부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관의 2024년 한해 전체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노동연구원 95.6%, KDI 81.9%, 보건사회연구원 8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9.5% 등 매우 높은 비율을 보임.

○ 이처럼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상당수가 비교적 소액이거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법정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비록 법정 예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식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임.

○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

지침”이라 함)’에서도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하여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연구회와 연구기관들은 연례적이고 과도한 수의계약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수의계약 비중〉

기관	수의계약 건수 비중					수의계약 금액 비중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연구회	95.6	96.6	94.5	88.5	89.3	89.6	97.6	84.4	73.3	77.3
과학	99.2	97.1	93.7	95.5	90.8	88.5	79.3	62.6	66.7	51.8
국토	92.4	94.2	91.7	96.1	96.3	61.2	57.4	50.9	62.6	62.8
대외	95.4	92.8	94.9	98.7	96.6	50.2	69.3	70.2	91.0	79.5
산업	83.5	80.2	87.9	86.6	81.4	62.9	55.4	70	62.4	60.4
에너지	93.3	94.3	95.7	93.3	92.0	60.4	69.1	68.3	54.7	64.2
정보	82.1	81.5	81.6	81.3	72.3	62.2	64.4	68.5	65.5	55.3
통일	100	96	97.2	96.7	94.1	100	82.4	89	68.6	62.7
KDI	85.2	80.4	86.5	87.7	94.9	48.4	47.5	55.1	70.4	81.9
교육	90.3	93.4	92.7	92.7	96.8	49.4	64.9	69.1	56.9	55.3
평가원	86.7	88.4	88.5	84.0	89.6	77.9	75.3	68.5	48.0	67.5
교통	70.1	63.5	67.0	65.8	62.4	20.8	25.8	24.8	30.7	24.9
노동	96.8	96.0	93.8	96.8	93.5	84.9	89.2	87.5	90.4	95.6
농촌	88.6	87.7	85.7	85.1	83.3	52.3	43.6	41.4	44.3	34.6
법제	93.9	93.5	94.8	96.3	95.5	90.3	81.2	84.2	91.2	78.5
보건	93.1	90.2	95.0	94.3	94.6	73.5	71.5	86.6	72.7	81.3
여성	92.6	91.6	93.4	92.0	88.3	57.6	60.1	56.3	61.8	48.2
조세	31.4	34.5	45.7	41.1	29.1	18.1	25.2	27.9	44.4	45.2
직능연	81.3	88.7	87.6	82.6	83.4	43.6	57.0	54.2	46.1	35.2
청소년	93.3	95.3	93.2	92.7	90.6	82.9	83.2	84.9	58.8	73.3
해양	93.5	88.8	88.5	85.2	79.1	96.1	61.5	70.6	65.6	61.1
행정	93.9	92.8	92.3	89.1	80.6	57.8	60.5	56.3	49.4	45.0
형사	83.8	88.7	86.6	81.3	91.1	49.0	52.2	58.8	36.3	34.4
환경	97.2	98.4	96.9	95.6	95.0	72.0	85.4	95.5	85.1	84.6
건축	97.8	98.1	100.0	97.3	98.1	91.1	75.9	100.0	93.8	94.2
대학원	97.2	97.4	92.3	90.8	96.5	90.0	88.3	21.8	46.2	83.3
육아	93.0	88.5	92.7	94.9	89.6	58.5	34.2	49.6	53.7	66.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둘째, 일부 연구기관들의 계약 관련 내부규정이나 해석 기준은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봄.

○ 먼저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노동연구원원은 회계규정 제96조제4호에서 ‘예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나 제조, 용역’으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여 수의계약 체결의 절차로서 복수의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⁷⁶⁾ 산업연구원은 내부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기만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벗어난 계약규정을 운용하고 있음.⁷⁷⁾

□ 셋째, 한국노동연구원은 퇴직자단체⁷⁸⁾에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사됨.

76)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77) ‘산업연구원 연구사업수행규칙’ 제30조(수의계약 선정 및 관리) ①위탁연구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단, 본(本) 연구과제의 위탁사항이 학술연구용역과 관련성이 낮은 구매, 시설공사, 행사대행 등인 경우 회계규정 일반계약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 위탁연구과제의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 위탁연구과제의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서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탁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단체,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나. 위탁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 해당하는 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인 경우

다.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78) 동인사회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조합임)

-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은 2023년 퇴직자가 대표자로 있는 단체와 2024회계연도에 2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함.

〈한국노동연구원이 퇴직자와 체결한 수의계약 연구 목록〉

(단위: 천원)

수의계약명	연구기간	금액
고용영향평가 정책제언의 반영 및 효과성 모니터링 연구	2024. 9. 12 ~ 2024. 12. 11	29,900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미만을 및 영향률 분석	2024. 4. 26 ~ 2024. 7. 23	9,5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은 수탁과제 수행 경험과 퇴직 인력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하였다는 입장이나, 퇴직자가 대표자로 있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기획재정부의 위 지침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함.
- 한국노동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내부규정⁷⁹⁾의 예를 참고하여 퇴직자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내용 등 내부규정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봄.

7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계약규정 시행규칙’ 제65조의3(수의계약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회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 또는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연구회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공통: 결산잉여금 과다

□ 결산잉여금이란 수입결산액에서 지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함.

-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기관의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 선적립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 후 그 잔여재원을 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

□ 2024회계연도에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연구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12개 기관으로 총 324억 4,600만원임.

- 결산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기관 순으로 살펴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8억 8,300만원, 한국교통연구원 71억 9,800만원, 육아정책연구소 65억 8,600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1억 8,700만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1억 700만원 등임.

〈2024회계연도 기관별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결산		
	예산(A)	결산(B)	증감(B-A)
합 계	1,162,027	1,194,473	32,446
0. 연구회	27,629	27,343	△ 286
연구기관	1,134,398	1,167,131	32,733
1. 과학	27,243	26,653	△ 590
2. 국토	45,768	46,696	928
3. 대외	36,883	36,352	△ 531
4. 산업	43,949	38,793	△ 5,156
5. 에너지	30,975	33,339	2,363
6. 정보	35,166	36,601	1,434
7. 통일	15,540	15,535	△ 5
8. KDI	84,652	86,988	2,336
8-1. 대학원	39,867	40,600	734
9. 교육	85,692	83,783	△ 1,909
10. 평가원	167,606	193,490	25,883
11. 교통	55,771	62,969	7,198
12. 노동	28,114	25,103	△ 3,011
13. 농촌	51,701	47,399	△ 4,303
14. 법제	21,644	21,761	117
15. 보건	41,739	37,794	△ 3,945
15-1. 육아	11,385	17,971	6,586
16. 여성	25,141	23,676	△ 1,465
17. 조세	56,829	60,936	4,107
18. 직능연	50,728	48,710	△ 2,018
19. 청소년	17,991	20,887	2,896
20. 해양	55,486	59,673	4,187
21. 행정	21,423	21,235	△ 189
22. 형사	16,309	15,891	△ 418
23. 환경	47,482	46,292	△ 1,190
24. 건축	19,314	18,008	△ 1,306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2024회계연도에 20억원 이상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8개 기관의 주요 재원을 살펴보면, 수탁용역수입이 결산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함.

〈결산잉여금의 주요 재원〉

(단위: 백만원)

연구기관	결산 잉여금	수탁용역수입				
		수탁용역 수입	정부대행 사업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정부출연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883	22,928	2,928	422	269	△735
한국교통연구원	7,198	7,553	△433	137	101	△303
육아정책연구소	6,586	6,688	-	32	-	△13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187	4,662	△121	197	124	△67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106	1,708	-	119	5,057	△2,77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896	2,973	-	5	△2	△80
에너지경제연구원	2,363	994	1,774	114	143	△583
한국개발연구원	2,336	4,036	-	329	66	△2,125

주: 상기 열거한 연구기관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 회계연도에 회계 처리 변경에 따라 기타 수입이 약 50억 5,700만원 증가하면서 결산잉여금이 많이 발생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연구기관의 결산잉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함.

연구기관들은 국무조정실로부터 기관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출연금으로 부족한 기관운영비는 수탁사업 등을 통해 보충함.

그러나 수입계획에 비하여 실제 수입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기관운영비 중 일부는 사용되지 못하고 결산잉여금으로 처리된다면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게 되므로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보다 기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간접비 과다 계상의 문제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탁용역 수입에서 비롯한 결산잉여금 229억 2,800만원 중 50억 4,600만원이 간접비 초과분으로 발생하였고, 한국교통연구원도 수탁용역 수입에서 비롯한 결산잉여금 75억 5,300만원 중 58억 3,900만원이 간접비 초과분에서 발생하였음.

〈기관별 간접비 초과분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기관	결산잉여금	수탁용역 수입		
		합계	직접비(비율)	간접비(비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883	22,928	17,882(78%)	5,046(22%)
한국교통연구원	7,198	7,553	1,714(22.7%)	5,839(77.3%)
육아정책연구소	6,586	6,688	5,793(86.6%)	895(13.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187	4,662	1,690(42.3%)	2,972(63.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106	1,708	1,128(85.9%)	580(14.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896	2,973	1,773(64.0%)	1,200(34.0%)
에너지경제연구원	2,363	994	△55(△5.5%)	1,049(105.5%)
한국개발연구원	2,336	4,036	1,510(37.4%)	2,526(62.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105.5%), 한국교통연구원(77.3%), 한국해양수산개발원(63.7%), 한국개발연구원(62.6%)은 간접비 초과분에 따른 수탁용역 수입 결산잉여금이 60%를 상회하였음.

간접비의 증가는 실제 연구활동을 위한 직접비 감소를 초래하고, 과다 계상된 간접비는 연구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채 결산잉여금으로 처리되므로 각 연구기관은 수탁용역 사업을 수행할 때 기관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간접비로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공통: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4회계연도 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우선고용 의무비율인 전체 고용인원의 6%를 27개 기관 중 7개 기관만이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검토의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6% 이상을 전상군경, 전몰군경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등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고용하여야 함⁸⁰⁾.

80) 「국가유공자법」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 「국가유공자법」은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 또는 공·사단체가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상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연구
개발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그 기준을 5%로 하고 있는데,
법 제33조의2제2항과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업종별 비율에 1%p를 더한 비율
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선고용비율이 전체 고용인원
의 6%임.

□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7개 기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
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해양수산
개발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7개 기관만이 우선고용 비율을 준수하였
고, 20개 기관은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
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 ③ 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3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별표 9.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 70. 연구개발업 5%

〈기관별 국가유공자 채용 현황〉

(단위: 명, %)

기관	총 직원수(A)	법정인원 (B=A×6%)	고용인원 (C)	고용률 (C/A)	2024년 신규고용 인원	준수여부
연구회	94	5	5	5.3	-	준수
과학	162	9	3	1.9	0	미준수
국토	287	17	17	5.9	4	준수
대외	212	12	13	6.1	-	준수
산업	222	13	6	2.7	1	미준수
에너지	160	9	7	4.4	0	미준수
정보	181	10	7	3.9	-	미준수
통일	97	5	5	5.2	0	준수
KDI	514	30	7	1.4	1	미준수
교육	447	26	6	1.3	2	미준수
평가원	355	21	6	1.7	0	미준수
교통	258	15	5	1.9	0	미준수
노동	140	8	3	2.1	0	미준수
농촌	250	15	11	4.4	2	미준수
법제	141	8	4	2.8	1	미준수
보건	210	12	9	4.3	1	미준수
여성	128	7	6	4.7	-	미준수
조세	344	20	3	0.9	0	미준수
직능연	175	10	10	5.7	3	준수
청소년	96	5	2	2.1	-	미준수
해양	291	17	19	6.5	1	준수
행정	122	7	2	1.6	-	미준수
형사	101	6	5	5.0	0	미준수
환경	255	15	10	3.9	0	미준수
건축	112	6	6	5.4	0	준수
대학원	116	6	3	2.6	0	미준수
육아	56	3	2	3.6	0	미준수

* 2024. 8.에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업체 등 실태조사서’ 기준으로 작성

** 총 직원수(A)는 업체 등 실태조사서 산정인원 기준대로(정규직, 무기계약직, 1년 이상 계약직)에 한하여 작성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미준수 기관이 20개 이하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17개 기관은 5년 연속으로 우선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기관별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 준수 현황〉

기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구회	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과학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국토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대외	미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산업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에너지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정보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통일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KDI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교육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평가원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교통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노동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농촌	준수	미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법제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보건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여성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조세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직능연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청소년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해양	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행정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형사	준수	준수	준수	준수	미준수
환경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건축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대학원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육아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기관(개)	20	20	19	17	2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이 있었으나, 미준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특성상 석·박사급 연구직 채용의 비중이 높는데 반해,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국가유공자의 인력풀 부족 등으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목표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단체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가 있는 기관이고, 특히 정부 출연을 받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공통: 능률성과급 체계 개선

1) 사업 및 결산 개요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4회계연도에 지급한 능률성과급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등 5개 기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운용지침」 및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을 위반하여 지급하고 있음.

2) 검토의견

- ☐ 능률성과급은 연구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인건비 예산외에 초과수입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운용지침」 및 각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23개 기관이 지급한 바 있음⁸¹⁾.
- ☐ 「예산운용지침」 및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권고안」(이하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최상·최하 등급 간 차이가 2배 이상 되어야 하고 업적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하며, 최상·최하 등급의 비율을 10%이상으로 배분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8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통일연구원은 해당연도 능률성과급 미발생 기관임.

□ 그러나 이러한 지급기준과 달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육아정책연구소 등 5개 기관은 5개 등급 미만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 최상·최하 등급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배분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B등급에 50% 이상이 분포하고 있음⁸²⁾.

〈5개 기관 2024년도 지급 능률성과급 지급 내역〉

(단위: 명, 백만원, %)

기관	구분	S	A	B	C	D	합 계
한국 교육 개발원	인원	-	41	391	44	-	476
	금액	-	151	1,175	120	-	1,446
	비중	-	8.6	82.1	9.3	-	100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인원	-	35	191	33	-	259
	금액	-	190	588	92	-	870
	비중	-	13.5	73.8	12.7	-	100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인원	7	14	91	18	-	130
	금액	33	68	217	106	-	424
	비중	5.4	10.8	70.0	13.8	-	100.0
한국 형사정책 ·법무 연구원	인원	-	11	68	10	-	89
	금액	-	2	10	2	-	14
	비중	-	12.4	76.4	11.2	-	100.0
한국 육아정책 연구소	인원	-	1	67	1	-	69
	금액	-	0.06	2	0.01	-	2
	비중	-	3.77	95.4	0.83	-	100

* B등급에는 평가제외 대상으로 등급 미발생자(휴직자, 중도입사자, 비정규직 등)도 포함됨.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82) B등급에는 평가제외 대상으로 등급 미발생자(휴직자, 중도입사자, 비정규직 등)도 포함됨에 따라, 능률성과급 지급시에는 B등급에 집중 분포하게 되며, 모수의 증가는 최상·최하 등급의 비중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회측에서 설명함.

□ 또한, 5개 기관의 최상·최하 등급간 차등지급률을 살펴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은 최상·최하등급 간 차등지급률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24년도 지급 능률성과급 차등지급률〉

기관	최상등급 표준지급률(A)	최하등급 표준지급률(B)	최상·최하등급 간 차등지급률(A/B)
한국교육개발원	88.1%	72.1%	1.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3%	67%	1.9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1%	99%	1.02
한국육아정책연구소	105%	95%	1.1

* 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경우 연구직에게 수탁사업 수탁기여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어 최상·최하 표준지급률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교육개발원 등 5개 기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운용지침」 및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능률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여 실적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능률성과급 지급 제도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한국교육개발원 등 5개 기관은 「예산운용지침」 및 「지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능률성과급 지급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6. 공통: 연구과제 미배정으로 인한 수시연구사업 집행부진 개선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을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를 의미함⁸³⁾.

○ 각 연구기관은 기본연구사업비 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수시 연구사업비를 편성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수시 연구수행 요청이 있거나 연구기관이 정책 현안에 대한 시급한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일정 경우에 수시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음⁸⁴⁾.

83)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 23

84)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13조(수시연구과제 선정) ① 연구기관은 정책연구의 시의성 및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연구사업비 총액의 10~30%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수시로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이월 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수시연구과제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시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선정·수행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수시 연구수행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 수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경우
3. 연구기관이 정책현안에 대한 시급한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각 연구기관의 과제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경우
4. 기타 연구기관이 수시연구과제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수시연구과제는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초과제와 정책과제로 구분하고, 연구기관의 과제선정 절차에 의거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2) 검토의견

□ 25개 출연연구기관⁸⁵⁾의 2024회계연도 수시연구사업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현액 37억 9,400만원 중 28억 5,200만원을 집행 (75.2%)하고 6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18.2%)하였으며, 2억 5,200만원을 불용(6.6%)⁸⁶⁾되었음.

〈2024회계연도 수시연구사업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4	79	-	133	126	7	-
국토연구원	100	65	-	165	165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0	37	-	157	139	18	-
산업연구원	175	275	-	450	246	204	-
에너지경제연구원	80	55	-	135	128	7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	3	-	20	20	-	-
통일연구원	59	32	-	91	40	51	-
한국개발연구원	145	-	△56	89	22	67	-
한국교육개발원	146	2	-	148	148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9	282	-	441	346	-	95
한국교통연구원	42	14	-	56	56	-	-
한국노동연구원	92	56	-	148	140	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5	55	-	210	42	13	155
한국법제연구원	70	111	-	181	112	6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3	30	-	143	116	2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2	40	-	112	91	2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9	9	△9	79	57	22	-

8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기관인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수시연구사업 없음.

86) 수시연구사업비 불용액은 출연금 미교부액임.

기관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한국직업능력연구원	91	50	-	141	116	25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7	5	-	52	51	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9	-	-	109	109	-	-
한국행정연구원	63	61	123	247	151	96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99	27	-	126	84	42	-
한국환경연구원	113	44	-	157	157	-	-
건축공간연구원	63	39	-	102	95	7	-
육아정책연구소	72	30	-	102	95	5	2
합 계	2,335	1,401	123 △65	3,794	2,852	690	252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수시연구사업비의 주된 집행 부진 사유는 연구과제가 2개의 회계 연도에 걸쳐 수행되는 경우와 수시연구사업비를 연구과제에 배정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경우⁸⁷⁾로 판단됨.

〈2022년~2024년 수시연구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연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사유별)			불용액 (미교부액)
			연도내 집행액	미지급액 (다음연도 집행)	연구기간 미종료	집행 잔액	미배정액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2022	158	145	-	-	13	-	-
	2023	152	115	-	-	10	27	-
	2024	133	126	-	-	7	-	-
국토연구원	2022	257	257	-	-	-	-	-
	2023	216	216	-	-	-	-	-
	2024	165	165	-	-	-	-	-

87)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 결산에서는 불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출연연구기관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됨.

기관명	연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사유별)			불용액 (미교부액)
			연도내 집행액	미지급액 (다음연도 집행)	연구기간 미종료	집행 잔액	미배정액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22	292	177	-	89	4	22	-
	2023	358	289	-	62	6	1	-
	2024	157	139	-	17	1	-	-
산업연구원	2022	285	127	1	36	35	86	-
	2023	407	244	-	163	-	-	-
	2024	450	246	-	94	56	54	-
에너지경제 연구원	2022	150	88	-	52	10	-	-
	2023	207	147	4	33	23	-	-
	2024	135	127	1	4	3	-	-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22	38	38	-	-	-	-	-
	2023	29	25	-	-	-	3.5	-
	2024	20	20	-	-	-	-	-
통일연구원	2022	99	80	-	-	6	13	-
	2023	97	85	-	-	3	9	-
	2024	91	40	-	23	6	22	-
한국개발연구원	2022	205	156	-	38	11	-	-
	2023	92	20	-	6	36	30	-
	2024	89	22	-	2	4	61	-
한국교육개발원	2022	364	298	20	-	31	15	-
	2023	285	243	2	-	26	14	-
	2024	148	146	2	-	-	-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22	658	265	-	-	29	364	-
	2023	679	319	-	-	29	331	-
	2024	441	346	-	-	-	-	95
한국교통연구원	2022	61	25	-	36	-	-	-
	2023	84	84	-	-	-	-	-
	2024	56	56	-	-	-	-	-
한국노동연구원	2022	334	199	-	99	26	9	-
	2023	229	165	-	48	16	1	-
	2024	148	140	-	2	5	1	-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022	328	197	-	118	13	-	-
	2023	278	224	-	19	34	-	-
	2024	210	42	-	13	-	-	155
한국법제연구원	2022	187.3	142	9	10	27	0.3	-
	2023	171	140	2	-	26	3	-
	2024	181	105	7	-	24	45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22	123	66	13	37	7	-	-
	2023	207	155	22	21	9	-	-
	2024	143	103	13	27	-	-	-

기관명	연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사유별)			불용액 (미교부액)
			연도내 집행액	미지급액 (다음연도 집행)	연구기간 미종료	집행 잔액	미배정액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22	189	153	-	31	5	-	-
	2023	183	138	-	36	9	-	-
	2024	112	91	-	17	4	-	-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2022	79	74	-	-	5	-	-
	2023	83	64	-	-	19	-	-
	2024	79	57	-	1	21	-	-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2022	301	301	-	-	-	-	-
	2023	238	238	-	-	-	-	-
	2024	141	116	-	-	5	20	-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22	90	85	-	-	5	-	-
	2023	75	61	-	-	14	-	-
	2024	52	51	-	-	1	-	-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2022	127	127	-	-	-	-	-
	2023	154	154	-	-	-	-	-
	2024	109	109	-	-	-	-	-
한국행정연구원	2022	152	132	-	-	14	6	-
	2023	188	176	-	-	12	-	-
	2024	247	151	-	-	15	81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2022	129	81	21	13	14	-	-
	2023	149	121	1	23	4	-	-
	2024	126	74	10	36	6	-	-
한국환경연구원	2022	235	228	-	-	7	-	-
	2023	230	217	-	-	14	3	-
	2024	157	157	-	-	-	-	-
건축공간연구원	2022	118	113	-	-	5	-	-
	2023	92	83	-	-	9	-	-
	2024	102	95	-	-	7	-	-
육아정책연구소	2022	176	167	-	-	9	-	-
	2023	184	177	-	-	7	-	-
	2024	102	97	-	-	5	-	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수시연구사업의 특성상 하반기에 시작하는 과제로 인하여 일정 부분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교부받은 연구비를 연구 과제에 배정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직전연도 사업비 집행잔액(이월금)을 당해연도 동일항목의 사업(기본연구→기본연구/연구지원→연구지원/일반사업→일반사업)에 편성하도록 규정⁸⁸⁾하고 있으므로, 집행되지 않은 수시연구사업비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수시연구사업비 외의 기본연구사업비에 편성되는 등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집행될 수 있음.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사업 구조〉

구 분	내 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88)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 25

〈미배정액의 다음연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연도	미배정액	다음연도 편성 내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3	27	수시연구사업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22	수시연구사업비
	2023	1	수시연구사업비
산업연구원	2022	86	기본연구사업비, 수시연구사업비
	2024	54	기본연구사업비, 수시연구사업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	3.5	수시연구사업비
통일연구원	2022	13	수시연구사업비
	2023	9	수시연구사업비
	2024	22	수시연구사업비
한국개발연구원	2023	30	기본연구사업비, 수시연구사업비
	2024	61	기본연구사업비
한국교육개발원	2022	15	수시연구사업비
	2023	14	수시연구사업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364	수시연구사업비
	2023	331	기본연구사업비, 수시연구사업비
한국노동연구원	2022	9	수시연구사업비
	2023	1	수시연구사업비
	2024	1	수시연구사업비
한국법제연구원	2022	0.3	수시연구사업비
	2023	3	수시연구사업비
	2024	45	수시연구사업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20	수시연구사업비
한국행정연구원	2022	6	수시연구사업비
	2024	81	수시연구사업비
한국환경연구원	2023	3	수시연구사업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따라서, 연구과제에 배정하지 않아 이월이 예상되는 수시연구사업비는 다음연도 기본연구사업의 출연금 규모를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부 연구기관에서 수시연구의 적절한 사업·예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예산현액 2억 1,000만원 중 4,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20.0%에 불과하고,

○ 한국개발연구원은 수시연구사업 예산 중 일부를 기본연구사업비로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예산현액 대비 24.7%로 저조하였으며⁸⁹⁾,

○ 한국행정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의 예산 일부를 수시연구사업비로 조정(1억 2,300만원)하였으나 조정한 금액의 78%에 해당하는 9,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⁹⁰⁾.

□ 따라서 각 연구기관은 수시연구사업비의 예산 집행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함과 함께 수시연구과제 수행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89) 당초 예산액 1억 4,500만원 중 5,600만원을 기본연구사업비로 조정하여 예산현액은 8,900만원으로 줄어들었음. 그 중 2,200만원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24.7%, 예산액 대비 15.2%를 집행한 것임.

90)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100만원을 합한 1억 2,400만원이었으나, 기본연구사업비 1억 2,300만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2억 4,700만원으로 늘어났음. 그 중 1억 5,100만원을 집행하여 과제에 배정하지 않은 8,100만원과 집행잔액 1,500만원을 더한 9,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됨.

7. 공통: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3.8%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⁹¹⁾.

2) 검토의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출연연구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6개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관별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⁹²⁾〉

(단위: 명, %)

기관명	상시 근로자수	의무고용 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의무고용 준수여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4	3	4	3.8	준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75	6	6	3.43	미준수
국토연구원	362	13	14	3.87	준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8	8	8	3.87	준수
산업연구원	230	8	9.5	4.13	준수
에너지경제연구원	189	7	5.3	3.17	미준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3	7	8.3	4.06	준수
통일연구원	105	4	5	4.76	준수
한국개발연구원	507	19	19	3.68	미준수
한국교육개발원	499	18	16	4.41	준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05	19	22	4.36	준수
한국교통연구원	336	12	12.2	3.63	준수
한국노동연구원	147	5	2	1.89	미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91	10	12	4.35	준수
한국법제연구원	147.8	5	6	4.06	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6.9	8.7	8.7	3.7	미준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1	4	5	5.34	준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52	13	15	4.26	준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99	10	13	4.51	준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0.5	4.6	5.0	3.83	준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30	12	13	3.94	준수
한국행정연구원	164	5.8	4.8	2.90	미준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1	4.6	4.9	4.07	준수
한국환경연구원	324	12	14	4.32	준수
건축공간연구원	146	5	6	4.11	준수

92) 일부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준수이나 의무고용인원에 비해 장애인 고용인원이 적은 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고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 단서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중증장애인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함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2)

기관명	상시 근로자수	의무고용 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의무고용 준수여부
KDI국제정책대학원	180	7	7.6	4.20	준수
육아정책연구소	65	3	2	3.80	준수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총 6,347만원으로, 법령상 의무 미준수로 인하여 예산 지출이 발생하였음.

〈2024년 고용부담금 납입액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고용부담금 납입액*	부담금 납부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200	출연금의 경상운영비
에너지경제연구원	8,399	자체수입의 경상운영비
한국개발연구원	1,199	자체수입의 경상운영비
한국노동연구원	31,845	자체수입의 경상운영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99	자체수입의 경상운영비
한국행정연구원	18,430	출연금의 경상운영비
합 계	63,472	

* 2024년도 부담금에 대한 2025년도 납부 내역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특히,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단위: 명, %, 천원)

기관명	연도	상시 근로자수	의무고용 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의무고용 준수여부	고용부담금 납입액
한국개발 연구원	2022	485	17	17	3.47	미준수	1,114
	2023	490	17	17	3.52	미준수	-93)
	2024	507	19	19	3.68	미준수	1,199
한국행정 연구원	2022	173.2	5.9	5.9	3.41	미준수	9,117
	2023	178.1	6.4	3.5	1.97	미준수	28,708
	2024	164	5.8	4.8	2.90	미준수	18,43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편, 2024년 장애인 직원 고용현황⁹⁴⁾을 살펴보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
국법제연구원 5개 기관의 장애인 직원은 모두 정규직·무기계약직
으로 근무하고 있어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대다
수의 기관은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음.

〈기관별 2024년 장애인 직원 고용현황〉

(단위: 명)

기관명	구분	직종	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규직	행정직	2
	무기계약직	행정직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규직	행정직	3
	무기계약직	행정직	1
국토연구원	정규직	연구직	2
	무기계약직	연구직/행정직	6
	비정규직	행정직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규직	행정직	1
	무기계약직	행정직	6
산업연구원	정규직	연구직/행정직	5
	비정규직	연구직/행정직	3
에너지경제연구원	정규직	연구직/공무직	2
	비정규직	행정직	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규직	연구직	1
	무기계약직	공무직	1
	비정규직	연구직/기술직/행정직	5
통일연구원	정규직	연구직	2
	무기계약직	행정직	3
한국개발연구원	정규직	연구직/행정직	3
	무기계약직	공무직	1
	비정규직	행정직	14
한국교육개발원	정규직	연구직/행정직	5
	비정규직	연구직/행정직	11

93) 본원 기준 일부 월 미달 있었으나, 부설 포함 전체 연평균 고용률 충족으로 고용부담금 미부과

94) 2024년 중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 현황으로, 연중 입·퇴사자가 포함되어 있음.

95) 이 중 3명은 공개채용을 통해 2025년 정규직으로 임용됨.

기관명	구분	직종	인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규직	연구직	1
	무기계약직	행정직	1
	비정규직	행정직	18
	일용직	행정직	2
한국교통연구원	정규직	연구직/행정직	4
	비정규직	행정직/일용직/인턴	10
한국노동연구원	정규직	연구직/행정직	2
	비정규직	행정직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규직	사무직	1
	무기계약직	공무직	1
	비정규직	행정직	4
한국법제연구원	정규직	연구직/전문직/행정직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규직	전문직	2
	무기계약직	행정직	2
	비정규직	연구직/인턴	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규직	연구직	1
	비정규직	행정직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규직	연구직/공무직	2
	비정규직	행정직	6 ⁹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규직	연구직	2
	비정규직	연구보조	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규직	연구직/행정직	2
	비정규직	연구직/행정직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규직	연구직	2
	무기계약직	사무직	1
	비정규직	단기채용직	5
한국행정연구원	정규직	연구직	1
	비정규직	행정직	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규직	연구직	1
	비정규직	행정직	4
한국환경연구원	정규직	연구직	2
	무기계약직	행정직	1
	명예직원	연구직	1
	비정규직	인턴	10
건축공간연구원	정규직	행정직	1
	무기계약직	행정직	2
	비정규직	연구직/행정직	2
KDI국제정책대학원	비정규직	비연구직	4
육아정책연구소	비정규직	행정직	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 재구성)

□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각 연구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적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개선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공통: 우수직원 해외연수 예산 비목 통일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우수직원 해외연수”는 매년 연구기관 행정직(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구기관 행정직 중 우수직원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근무 의욕 고취 및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운영하고 있음.

2) 검토의견

- 우수직원 해외연수는 각 연구기관의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국내교육 및 외국의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 등의 방문을 통하여 정책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과정, 정부정책 기여 우수사례 등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연구지원체제의 운용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2개 출연연구기관⁹⁶⁾의 우수직원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총 2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4년 우수직원 해외연수 개요〉

방문국가	기간	주요 방문기관	연수자
A그룹 (네덜란드, 벨기에)	11. 5.~11. 13. (7박 9일)	- 마이크로소프트 (네덜란드) - 연방기획국(벨기에) - 국제전략연구소(네덜란드)	16명
B그룹 (체코, 오스트리아)	11. 6.~11. 14. (7박 9일)	- 정치사회연구소 (체코) - 경제연구소 (체코) - 경제연구소 (오스트리아)	19명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9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외

- 동 사업은 당해연도 출연금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기관별 참석 규모를 제안하며, 최종 참석 대상은 각 기관의 우수직원(연구지원인력)을 기관별 자체 기준으로 선발하여 확정하고,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비용 역시 각 기관이 개별 부담하고 있음.

〈우수직원 해외연수 사업 예산 부담 현황〉

예산 부담	내용	비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전체 해외연수자에 대한 국내연수(집체교육) 비용 집행	
	- 연구회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소속 임직원의 항공료 및 체제비 등 해외연수 관련 비용 부담	
개별 연구기관	- 기관별 여비규정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항공료 및 체제비 등 해외연수 관련 비용 부담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그런데, 2024년 기관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각각 다른 비목에서 집행하였음⁹⁷⁾.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9개 기관은 국외여비로, 국토연구원 등 12개 기관은 교육훈련비 등으로 집행하였음.

〈기관별 2024년 우수직원 해외연수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예산과목	집행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외여비	5,745
	공공요금	124
	회의비	2,857

97) 이에 대하여 사업 총괄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어서 세부 비목별 집행이 가능하나, 각 연구기관은 총액을 청구받고 있어 하나의 항목으로 집행되며, 연구기관별 내부 기준에 따라 편성·집행한다고 설명함.

기관명	예산과목	집행액
	수용비	1,665
	전문가활용비	2,090
	임차료	2,597
	외부용역비및부담금	5,83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외여비	6,212
국토연구원	교육훈련비	5,885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외여비	5,88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육훈련비	12,495
한국개발연구원	교육훈련비	12,424
	국내여비	10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훈련비	12,09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훈련비	12,097
한국교통연구원	교육훈련비	12,559
한국노동연구원	국외여비	5,998
	국외여비	6,35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외여비	12,298
한국법제연구원	국외여비	5,88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여비	12,4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육훈련비	6,2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교육훈련비	12,42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훈련비	12,52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육훈련비	6,099
한국행정연구원	국외여비	12,5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외부용역비	5,885
한국환경연구원	교육훈련비	5,885
	여비	51
건축공간연구원	공공요금	44
	국외여비	6,071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육훈련비	5,885
육아정책연구소	여비	5,885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교육훈련비를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 여비를 연구기관 운영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 및 국외출장여비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수직원 해외연수의 예산을 각 연구기관이 동일 비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9. 연구회: 연구개발적립금 운용 개선 검토

- 연구회는 2013년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자체수입의 초과달성, 비용의 절감, 연구개발 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을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에 재투자하는 연구개발적립금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연구개발적립금 개요〉

구 분	내 용
○ 연구개발적립금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연구개발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 - 연구개발 및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초과분, 명시성 이월금을 제외한 지출예산잔액(단, 미충원인력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은 제외),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한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함.
○ 연구개발적립금 사용처	자체연구사업, 연구인프라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 등에 지출하되 총 적립금의 40% 이상을 자체연구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이사회 의결로 변경 가능)
- 자체연구사업	연구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기본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연구관련 정보화사업)
- 연구지원·인프라사업	연구지원성격의 사업, 연구(업무)효율성 및 몰입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 사업
- 교육훈련사업	연구기관 소속 직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등에 사용되는 사업(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연수교육비 등)
- 기관발전사업	기타 연구기관의 장이 기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경상적 경비 등)
○ 연구개발적립금 집행잔액의 적정 규모	직전 연도 결산기준 총예산의 3.0% 이내(초과하는 집행잔액분은 정부출연금 예산편성시 연계)

(자료: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 2024회계연도의 연구기관 전체 연구개발적립금은 총 327억 4,300만원이고,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세 차례 의결(3월, 4월, 8월)된 사용승인액은 315억 3,600만원(가용액 대비 96.3%)임.

<2024회계연도 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기관	가 용 액	1차 승인 (3월)				2차 승인 (4월)								3차 승인 (8월)						1+2+3차 승인액		
		자체 연구		기관 발전		자체 연구		연구 지원· 인프라		교육 훈련		기관 발전		자체 연구		연구 지원· 인프라		기관 발전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누 적 비 율	건	예산	건	예산	예산	비율
합계 (26)	32,743	77	7,665	14	2,879	93	6,764	52	8,570	11	479	19	3,931	7	239	46.5	12	679	6	331	31,536	96.3
과학	785	8	240	1	70	4	130	1	140	-	-	2	205	-	-	47.1	-	-	-	-	785	100.0
국토	2,548	9	960	1	140	2	129	9	834	1	40	4	349	-	-	42.7	1	95	-	-	2,548	100.0
대외	157	1	80	-	-	-	-	-	-	1	40	1	37	-	-	50.8	-	-	-	-	157	100.0
산업	1,106	2	160	1	130	1	330	1	86	-	-	1	400	-	-	44.3	-	-	-	-	1,106	100.0
에너지	999	2	114	1	203	10	288	2	235	-	-	2	114	-	-	40.2	-	-	1	45	999	100.0
정보	1,282	3	127	1	154	6	400	-	-	-	-	1	600	-	-	41.2	-	-	-	-	1,282	100.0
통일	27	1	11	-	-	1	16	-	-	-	-	-	-	-	-	100	-	-	-	-	27	100.0
KDI	2,064	12	556	1	100	1	50	3	480	2	37	1	178	2	70	40.0	3	105	1	114	1,690	81.9
대학원	1,321	3	450	-	-	1	45	1	363	-	-	1	378	-	-	40.1	-	-	-	-	1,236	93.6
교육	2,142	-	-	2	1,100	-	-	-	-	-	-	1	1,042	-	-	-	-	-	-	-	2,142	100.0
평가원	3,654	2	200	1	100	2	1,262	4	1,965	1	100	-	-	-	-	40.2	1	15	-	-	3,641	99.6
교통	5,968	11	1,923	1	365	14	1,326	5	1,555	-	-	2	158	-	-	61.0	-	-	-	-	5,327	89.3
노동	325	1	100	-	-	2	130	1	30	-	-	-	-	-	-	70.8	2	65	-	-	325	100.0
농촌	763	-	-	-	-	4	210	3	228	-	-	1	70	3	95	40.0	1	46	2	114	763	100.0
법제	1,295	3	300	1	100	3	290	3	555	1	50	-	-	-	-	45.5	-	-	-	-	1,295	100.0
보사	1,085	-	-	1	90	19	644	2	199	1	20	-	-	2	74	66.2	-	-	1	58	1,085	100.0
육아	62	-	-	-	-	1	30	1	11	-	-	1	21	-	-	48.7	-	-	-	-	62	100.0
여성	90	2	90	-	-	-	-	-	-	-	-	-	-	-	-	100	-	-	-	-	90	100.0
조세	211	-	-	-	-	1	48	1	20	-	-	-	-	-	-	40.7	1	50	-	-	118	55.9
직능	1,257	-	-	-	-	6	550	1	260	1	68	1	379	-	-	43.8	-	-	-	-	1,257	100.0
청소년	485	1	60	1	160	2	135	4	130	-	-	-	-	-	-	40.2	-	△9	1	9	485	100.0
해양	1,984	6	1,514	-	-	-	-	1	424	1	46	-	-	-	-	76.3	-	-	-	-	1,984	100.0
행정	242	-	-	-	-	2	105	2	137	-	-	-	-	-	-	43.4	-	-	-	-	242	100.0
형사	108	-	-	-	-	1	60	1	34	1	14	-	-	-	-	55.3	-	-	-	-	108	100.0
환경	2,004	6	540	1	167	9	514	4	601	1	63	-	-	-	-	52.6	2	120	-	-	2,004	100.0
건축	778	4	240	-	-	1	72	2	283	-	-	-	-	-	-	40.1	1	183	-	-	778	100.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4회계연도 연구개발적립금 사용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금액	비율	비 고
연구기관 합계	31,536	100	
자체연구사업	14,669	46.5	기관 목적에 부합한 연구과제 수행 사업
연구지원·인프라 사업	9,239	29.3	연구기획·학술회의·국제교류 등 연구지원 성격 또는 연구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인프라 개선 등 사업
교육훈련사업	478	1.5	직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
기관발전사업	7,150	22.7	기관장이 기관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연구개발적립금의 적립실태 및 사용현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집행되는 연구사업은 대부분 1년 이내 사업 위주로 진행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안 및 제언을 제시하는 데 제약이 있고 기존에 수행하는 기본연구사업과 유사한 연구에 한정될 소지가 있음.

2024회계연도에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수행한 자체연구 178개 과제 중 중·장기 연구과제는 2건(산업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각각 1건씩 수행)에 불과함.

- 둘째, 현행 규정이 연구개발적립금을 자체연구사업에 40% 이상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을 기관발전사업의 경상적 경비로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 2024회계연도에도 전체 연구개발적립금의 22.7%가 기관발전 사업에 집행되었는데, 산업연구원(47.9%), 정보통신정책연구원(58.8%), 한국교육개발원(100%)의 경우 연구개발적립금의 대부분을 기관발전사업에 집행하였고, 이는 자칫 경상적 경비의 편법적인 증액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음.

〈2024회계연도 기관발전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구기관	금액	기관발전 사업
산업연구원	130	북경지원 운영
	400	산업연구원 미래 비전 50주년 수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4	청년인턴
	600	ICT 글로벌 컨퍼런스 및 기념행사
한국교육개발원	100	청년인턴
	1,000	차입금 상환
	1,042	차입금 상환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셋째, 연구기관별로 예산 규모가 차이가 나는데도 연구개발적립금의 적정규모를 획일적으로 직전 연도 결산기준 총예산의 3% 이내로 규정하면 예산 규모가 비교적 큰 연구기관은 쉽게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음.

또한, 적립금 규모가 큰 기관은 다음연도에 일시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 규모가 커져 자칫 관리부실이나 예산의 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현행 규정에서는 연구개발적립금 규모가 집행잔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된 집행잔액분에 대해 다음연도 정부출연금 예산편성 시에 연계(감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의 자체수입 증대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위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봄.

○ 첫째, 중·장기 연구과제 등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연구개발적립금 총액의 40% 이상을 자체연구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여 연구지원·인프라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 등도 사용비율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상 기관발전사업은 단순히 ‘기타 연구기관의 장이 기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만 정의되어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연구개발적립금의 적정규모를 일괄적으로 직전 연도 결산기준 총예산의 3% 이내로 규정하기보다는 예산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또한, 연구개발적립금 규모가 집행 잔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다음연도 정부출연금에 연계하는 제도도 그 초과분을 출연금과 자체수입의 경우를 분리하여 정함으로써 기관의 자체수입 증대 노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10. 산업연구원⁹⁸⁾: 한-아세안 정책연구협력센터 운영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연구원” 사업은 산업·기술과 산업별 통상 및 지역산업에 관련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산업연구원의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68억 400만원 중 242억 6,100만원이 집행되고, 16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산업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산업연구원	24,965	24,965	1,839	-	-	26,804	24,261	1,679	864	23,973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산업연구원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⁹⁹⁾과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하기 위하여 2024년 신규사업으로 ‘한-아세안 정

98) 세부사업: 산업연구원(1535-301)

99) 현재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10개국임.

책연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추진함.

- 센터의 2024년 예산액은 7억 4,500만원으로 그 산출 근거는 여비 1억 7,800만원,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억 7,700만원, 사업인건비(비정규직 인건비) 1억 5,700만원,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1억 3,600만원 등으로 구성됨.

- 센터는 본부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연락사무소로 구성되는데, 본부는 아세안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한 국내 전략 허브로서, 정책의제 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부처·유관기관 조정, 지식 축적을 담당하는 정책 설계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현지 연락사무소는 현지 대사관, 아세안 사무국, 인도네시아 정부, 현지에 진출한 산업계 등과의 대면을 기반으로 한 정보 파악과 사업 협의,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나아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아세안 현지 연구를 위한 연구 협력 플랫폼 등 현장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본 사업은 2024년 1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수시배정 통보를 받으면서 현지 연락사무소 개소 등이 지연되었음.

-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현지 연락사무소는 산업연구원 직원 외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에서 각 1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공무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별도정원 승인이 지연되면서 본 사업은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되었음.

○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승인이 불허되면서 연구기관 중심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2024년 10월에 서야 수시배정을 해제하여 예산을 교부받았음.

○ 결국, 현지 연락사무소의 법인 등록이 2024년 12월에 되었고, 정식 개소는 2025년 1월에 이루어졌음.

□ 산업연구원의 본 사업이 지연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 첫째, 사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므로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현지 연락사무소는 2024년 초 개소하여 맞춤형 정책연구 기획, 아세안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의 네트워크 조성·지원, 현지 국제행사 및 연구 과제 관리, 산업전략 수립, 산업계의 현장 의견 수렴, 국제세미나 실시, 산업별 정책다이얼로그¹⁰⁰⁾의 확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2024년에는 수시배정 해제 지연에 따라 사업성과 창출이 부진하였고, 2025년 6월이 되어서야 첫 번째 정책다이얼로그(전기차 생태계 다이얼로그)가 진행됨.

○ 둘째, 예산 집행을 제고가 필요함.

본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7억 4,500만원이었으나, 수시배정

100) 정책다이얼로그란, 특정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의미함.

해제가 2024년 10월에 이루어지면서 실제 교부액이 1억 8,800만원 (25.2%)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실집행액이 1억 1,100만원에 그쳐 예산 대비 실집행율이 14.9%임.

- 셋째, 예산의 적절한 비목편성 및 조정이 필요함.

산업연구원은 현지 연락사무소 직원의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각각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사업예산에서 지급하였음.

산업연구원은 기획재정부와 면담을 통해 현지 파견자 인건비(파견수당 및 가족교육비), 경상운영비(주택임차료, 이사비) 등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최소 인원 기준으로 사업비를 통해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도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사업비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인건비 등에 사용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음.

- 넷째, 파견인력의 구성 측면에서 현지 네트워크 구성 등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과 달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즉, 공무원 파견이 결렬되면서 예정과 달리 현지사무소에는 산업연구원 직원 외에 연구회, 대한상공회의소 직원이 각각 1인 파견되었고 이들 직원의 역할은 아래와 같음.

〈현지 연락사무소 인력구성 현황〉

소속	직위	주요 역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소장)	업무총괄 - 대사관 정책지원 - 경제 동향 및 주요 이슈 대응 - 사무소 운영 총괄(행정 및 회계 등)
연구회	전문위원 (파견직원)	연구기획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 국가별 맞춤형 정책연구 기획 - 국제기구, 각국 대사관 및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 아세안 지역 역량 강화 지원
대한상공회의소	실장 (파견직원)	산업협력 및 민간부문 네트워킹 - 산업계 현장 의견 청취 및 반영 - 현지 진출 기업 및 한일 기업 등 네트워킹

(자료: 산업연구원)

□ 현 인력은 계획(산업연구원 직원 및 공무원 3인 파견)에 비하여 적다는 점, 연구회 직원이나 대한상공회의소 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국가기관으로서의 네트워크나 집행력 및 예산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봄.

□ 산업연구원은 본 사업의 지연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정 및 재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한국개발연구원¹⁰¹⁾: 과다한 상품권 구입 및 기념품 제작 주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개발연구원” 사업은 국내외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478억 1,100만원 중 417억 8,000만원이 집행되고, 17억 7,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1억 2,5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한국개발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개발연구원	46,106	46,106	1,705	-	-	47,811	43,907	1,779	2,125	47,31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기관인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개발, 공공 정책, 공공관리 분야의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자문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 사업 내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음.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2024회계연도에 280억 4,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64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원을 불용하였음.

101) 세부사업: 한국개발연구원(1539-301)

〈2024회계연도 KDI 국제정책대학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25,608	25,608	2,436	-	-	28,044	26,428	616	1,000	21,407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한국개발연구원은 2024회계연도에만 42차례에 걸쳐 약 1억 59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과 기프티콘을 구매함.

○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현안 및 경제의식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1회에 3,950만원의 기프티콘 구매를 집행하는 등 다소 과도한 모바일상품권과 기프티콘을 집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한국개발연구원의 2024회계연도 모바일상품권 등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회수	총 집행액
월간 나라경제	12회	700
학술 및 정보교류	11회	10,802
빅데이터와 여론조사를 활용한 경제이슈 분석	7회	21,200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2회	8,880
경제현안 및 경제의식에 대한 여론조사	6회	42,190
연구기획사업	2회	1,192
학교경제교육사업	1회	900
K-콘텐츠 산업의 시장구조 분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1회	4,260
경제 구조개혁의 방향과 전략	1회	4,960
경제교육 및 경제정책정보 제공	1회	10,845
합계	42회	105,501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주: 생일축하용 기프티콘, 명절선물용 온누리상품권 등 직원 복지성 상품권 등은 제외하였음.

- 한국개발연구원은 대국민 설문 조사나 전문가 의견조사 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을 구매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의 구매 횟수나 금액이 다소 과도하고,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조사 참여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필요최소한의 규모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한국교통연구원이나 통일연구원은 이러한 구매 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집행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기관인 KDI국제정책대학원은 2024년 한 해에만 69종, 약 8,700만원의 기념품을 제작하였는데,¹⁰²⁾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10종 미만의 기념품을 소액 집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비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비록 KDI국제정책대학원이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행사를 진행하여 다른 기관에 비하여 많은 기념품을 제작할 수밖에 없으나,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에서도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만큼 향후 적정한 규모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102) KDI국제정책대학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도 매년 유사한 수준의 기념품을 제작함.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¹⁰³⁾: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업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 258억 1,200만원 중 250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327	25,327	485	-	-	25,812	25,052	26	734	26,02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회계연도 경상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목으로 포상금을 총 1,000만원을 집행하였음. 당해 포상금은 근속포상 및 정년(명예)퇴임포상 지급에 해당하며, 10년 근속자 8명에게 30만원씩 총 240만원, 20년 근속자 4명에게 40만원씩 총 160만원, 정년(명예)퇴임자 6명에게 100만원씩 총 600만원이 지급되었음.

103) 세부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41-301)

〈최근 5년 근속포상 및 정년(명예)퇴임포상 지급액〉

구분	근속포상			정년(명예)퇴임포상 (100만원)	지급총액
	10년 (30만원)	20년 (40만원)	30년 (50만원)		
2024년	240만원	160만원	-	600만원	1,000만원
2023년	660만원	200만원	-	600만원	1,460만원
2022년	690만원	400만원	-	800만원	1,890만원
2021년	330만원	80만원	-	-	410만원
2020년	180만원	40만원	-	800만원	1,020만원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¹⁰⁴⁾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제3항¹⁰⁵⁾에서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정부 지침과 국회 지적사항의 취지에 대한 전 직원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2025년 근속포상 제도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임.

104)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38p.

105)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경조사비, 기념품 등) ① ~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향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장기근속자 및 정년(명예)퇴임자에 대한 포상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¹⁰⁶⁾: 부설기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는 방안 등 검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42억 9,400만원 중 238억 8,7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871	23,871	423	-	-	24,294	23,887	262	145	23,786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설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업 내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음.

106) 세부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1546-301)

- 육아정책연구소는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83억 1,800만원 중 80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육아정책연구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8,135	8,135	183	-	-	8,318	8,075	109	134	8,503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¹⁰⁷⁾에서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1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연구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24개 기관을 열거하고 있음.
-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부설연구기관으로서 2005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육아정책연구소의 설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¹⁰⁸⁾임.

107)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08) 제13조의2(육아정책연구소의 설립) ① 연구원은 육아정책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그런데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직·인사·예산 등의 위상을 살펴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별도로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 즉, 육아정책연구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아닌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있고, 육아정책연구소의 출연금도 기관이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인사·조직, 사업계획의 수립 및 회계 등의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 조직 규모면에서도 육아정책연구소는 정규 연구인력 38명을 비롯하여 정원 61명의 기관으로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연구회의 기관평가에서도 다른 법정 연구기관들처럼 독립된 평가대상임.

〈부설연구기관(육아정책연구소)의 독립적 특징〉

구 분	부 설 기 관
운영규정	· 별도 내부규정
소장 임명	·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운영협의회	· 이사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협의회 규정 (위원장: 소장)
권리·의무/ 독립성·대표성	· 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 보유 · 정부(소속부처 및 기재부, 감사원 등 관계부처), 국회, 연구회 등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직제	· 육아정책연구소장이 결정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임면, 승진, 전보, 포상, 징계 등)	· 육아정책연구소장 권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및 변경	· 별도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회계 및 결산	· 별도 독립회계.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관리	· 독립 선정, 계약 및 관리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가 연구기관의 설립은 법률 개정을 거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관이 법률에 근거 없이 정관을 근거로 사실상 독립된 연구기관인 부설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및 예산 통제권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¹⁰⁹⁾ 운영의 투명성이나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설연구기관도 그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지역조직의 설립에 관한 입법례¹¹⁰⁾처럼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자세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9) 2007년 국토연구원의 정관에 따라 부설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던 건축도시공간연구소(현 건축공간연구원)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의 증원이 이루어지다 2020년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 연구기관으로 승격하였음.

110)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¹¹¹⁾: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수립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 163억 9,900만원 중 150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3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4회계연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16,087	16,087	312	-	16,399	15,078	243	1,078	16,933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검토의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4년 12월에 2025년 전자저널 및 학술DB이용을 위해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¹¹²⁾하였고, 총 계약금액은 1억 3,700만원임.

111) 세부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1547-301)

1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2호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해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2024회계연도 전자저널 및 학술DB이용을 위한 계약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전자저널 및 학술DB이용(JSTOR)	2024-12-23	2025-01-01 2025-12-31	5	이미숙외1인, 유한회사신원데이터넷
전자저널 및 학술DB이용(SAGE외)	2024-12-24	2025-01-01 2025-12-31	105	글렌 알렌 파월, 엡스코코리아주)
전자저널 및 학술DB이용(Social Science Premium Collection)	2024-12-24	2025-01-01 2025-12-31	21	박찬현외1인, 클래리베이트애널리 틱스코리아주식회사
전자저널 및 학술DB이용(DBpia)	2024-12-24	2025-01-01 2025-12-31	6	최순일, (주)누리미디어
합 계			137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러나 이를 위해 기관고유사업인 28개 내역사업에 편성된 2024회계연도 연구정보활동비 예산 1억 3,700만원을 12월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였음.

〈2025년도 전자저널 및 학술DB이용을 위한 2024회계연도 연구정보활동비 집행 내역〉

(단위: 원)

구분	집행금액	집행일자	사업내역
2025년도 전자정보원(전자저널/ DB) 구독 계약(DBpia)	2,579,840	2024.12.27.	2024년 성인지통계시스템 운영 사업-연구 지원사업
	3,532,160	2024.12.27.	지역의 성별 특성과 인구 감소의 관계에 관한 -기본연구
소계	6,112,000		

구분	집행금액	집행일자	사업내역
2025년도 전자정보원(전자저널/ DB) 구독 계약(JSTOR)	3,177,000	2024.12.26.	웹기반형 플랫폼 여성 종사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창작 및 전문서비스 분 야를 중심으로-기본연구
	5,000	2024.12.26.	웹기반형 플랫폼 여성 종사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창작 및 전문서비스 분 야를 중심으로-기본연구
	992,000	2024.12.26.	양성평등 정책포럼-운영비-연구지원사업
	837,760	2024.12.26.	연구성과 및 평가관리-연구지원사업
	10,441	2024.12.26.	저출산 대응 가족패널조사 사전연구(I)- 일반연구사업비
소계	5,022,201		
2025년도 전자정보원(전자저널/ DB) 구독 계약(SAGE외)	16,460,530	2024.12.26.	2024년 성인지 예·결산 추진 사업-일반연 구사업비
	10,000	2024.12.26.	2024년 성인지 예·결산 추진 사업_일반연 구사업비
	15,523,740	2024.12.26.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 회 운영 사업-일반연구사업비
	13,801,100	2024.12.26.	성주류화 제도의 통합적 운영모형 연구 (Ⅲ): 정부기관의 조직 기반 성주류화 추진 모형 개발-일반연구사업비
	12,953,380	2024.12.26.	2024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일반연구사업 비
	8,513,600	2024.12.26.	젠더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Ⅲ): 고령화 시대, 노인돌봄 격차 해소 전 략-일반연구사업비
	8,456,250	2024.12.26.	분야별 성폭력 판례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방안(Ⅱ):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일반 연구사업비
	7,466,880	2024.12.26.	2024년 여성가족패널조사-일반연구사업비
	5,990,000	2024.12.26.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Ⅲ): 기 후변화 대응정책의 성인지적 개선방안-일 반연구사업비
	4,300,000	2024.12.26.	연구기획 및 경영혁신(예산제도센터)-연구 지원사업
	3,800,000	2024.12.26.	기업 내 공정과 성평등 구현을 위한 인사 관리제도와 정책방안-기본연구
	3,720,980	2024.12.26.	비친족 가구 현황과 정책 과제-기본연구
	3,517,497	2024.12.26.	2024년 성평등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일반연구사업비
소계	104,513,957		
2025년도 전자정보원(전자저널/ DB) 구독 계약(Social Science Premium Collection)	3,345,404	2024.12.26.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Ⅱ)-일반연구사업비
	54,596	2024.12.26.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Ⅱ)-일반연구사업비
	2,792,400	2024.12.26.	청년세대의 성별 디지털안전 경험 및 인식 에 관한 연구-기본연구

구분	집행금액	집행일자	사업내역
	2,400,000	2024.12.26.	청년 정치인의 성평등 의식과 정치문화 변화에 대한 전망과 과제-기본연구
	2,300,000	2024.12.26.	여성 디지털 핵심인재 교육훈련 개선 및 진로교육 방안-기본연구
	2,200,000	2024.12.26.	취약 일자리 여성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기본연구
	2,200,000	2024.12.26.	여성노숙인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과 건강할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기본연구
	2,101,845	2024.12.26.	자녀 양육 가구 현금지원제도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기본연구
	1,956,000	2024.12.26.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연구지원사업
	1,380,460	2024.12.26.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전략연구: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와 여성 일자리 고도화 전략 연구-일반연구사업비
	306,970	2024.12.26.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전략연구: 가족 다양성과 수요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공급과 사각지대 연구-일반연구사업비
	142,039	2024.12.26.	저출산 대응 가족패널조사 사전연구(I)-일반연구사업비
	15,853	2024.12.26.	연구성과 및 평가관리-연구지원사업
소계	21,195,567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연구정보활동비란 해당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연수, 정보수집 또는 활동경비를 말하고, 국내·외 교육훈련, 정보수집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의 연구정보활동경비, 당해 연구사업과 관련된 도서 등 문헌, 학술정보 DB 사용료 등 자료 구입비, 특근 직원에 대한 식비 등으로 구성됨.

□ 전자저널 및 학술DB구독 계약은 당해 연구사업과 관련된 학술정보 DB사용료에 해당하여 연구정보활동비로 집행 가능하나, 「국가재정법」¹¹³⁾에서는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

일에 종료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년도 사용 계약을 위해 2024회계연도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임.

- 회계연도 독립 원칙은 정부 세입·세출의 이연 처리 등으로 인해 회계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며, 사업기간과 회계기간의 불일치는 국회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필요가 있음.

113)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5. 한국직업능력연구원¹¹⁴⁾: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 집행 개선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2024회계연도 출연금 예산현액 226억 8,500만원 중 216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00만원을 이월하여 8억 5,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22,543	22,543	142	-	22,685	21,684	133	859	23,586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 검토의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연구개발적립금 12억 5,700만원 중 자체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인프라 구축 사업, 교육훈련 사업, 기관발전 사업 등에 8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500만원을 이월하여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114) 세부사업: 한국직업능력연구원(1549-301)

〈2024회계연도 연구개발적립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1,257	1,257	-	-	1,257	898	335	24	688
자체연구개발	550	550	-	-	550	377	163	10	330
연구지원인프라	260	260	-	-	260	258	-	2	145
교육훈련	68	68	-	-	68	56	-	12	68
기관발전	379	379	-	-	379	207	172	-	145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최근 5년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훈련 사업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연구개발적립금 일부를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집행하고 있음.

○ 2024년의 경우 연구개발적립금 교육훈련사업 예산 6,800만원 중 퇴직예정자 6인을 대상으로 전화 영어, 귀산촌 임업후계자 과정, 목공 전문 과정 등에 797만원을 집행하였음.

〈최근 4년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	대상	집행액	프로그램 내용
2024	연구개발 적립금- 교육훈련 사업	68,000	퇴직 예정자 6인	800	전화 영어
				380	귀산촌 입업후계자 과정
				1,500	목공 전문 과정
				490	한식 심화 과정
				1,600	광고사진 전문과정(2단계)
				400	전화 영어
				800	면접관 자격 인증 과정
				1,600	광고사진 전문과정(2단계)
400	산림기사과정				
합계				7,970	
2023	연구개발 적립금- 교육훈련 사업	68,000	퇴직 예정자 9인	800	드론 경량 비행장치 조정자 과정
				68	채테크·부동산 공·경매
				57	알아두면 든든한 생활법령 정보
				50	정부 지원을 활용한 창업 성공 전략
				800	전화 영어
				50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유튜브 스쿨
				50	슬기로운 자산관리
				50	심리명리학
				50	부동산 채테크와 자산관리
				270	부동산 투자의 사례분석 및 실전투자
				50	세종시에서 빛나는 사회적 기업가 되기
				50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유튜브 교실
				50	심리 명리학의 기초학습
				50	알아두면 든든한 생활법령 정보
				800	전화영어
				1,200	광고사진 전문과정(1단계)
				50	교수역량강화 교육과정
				1,200	전화 영어
				800	전화 영어
				1,200	광고사진 전문과정 (1단계)
				230	영어 교육(오픽)
				450	바리스타 교육과정
				104	면접관 기법향상을 위한 직무적성 교육
합계				8,479	
2022	연구개발 적립금- 교육훈련 사업	60,000	퇴직 예정자 3인	810	손해평가사 교육과정
				133	화상 영어 회화
				1,600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199	영어 교육(토익)
합계				2,742	

구분	사업명	예산	대상	집행액	프로그램 내용
2021	연구개발 적립금- 교육훈련 사업	58,000	퇴직 예정자 5인	960	베이킹 전문과정
				660	목공 과정
				380	바리스타 전문과정
				800	전화 영어
				367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
				60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유튜버
				180	유튜브 크리에이터
				1,950	한식 요리 심화반
				800	전화영어
				440	공공기관 말하기, 글쓰기 기법 향상 세미나
				340	전자회로, 신호 및 시스템
합계				6,937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은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또는 연구개발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을 부족한 퇴직급여충당금에 우선 적립 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적립금은 자체연구개발·교육훈련·기관발전 및 기타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¹¹⁵⁾¹¹⁶⁾.

115)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제4조(적립금의 사용)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자체연구개발사업
2. (삭제)
3. 교육훈련사업
4. 기관발전사업(경직성 경상비 성격 사업 제외)
5. 기타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

② ~ ③ (생략)

④ 사용계획 수립 시에는 제1항제1호의 자체연구개발사업 비중을 당해 연도 적립금 총 사용금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해당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116) 2024.2.29. 개정된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에 따른 구분

□ 그러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은 경상운영비 성격¹¹⁷⁾으로 연구 재투자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구분	내용
자체연구개발사업	○ 연구기관 설비목적에 부합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연구기획 및 정책연구, KDI대학원 교육사업 포함) ○ 연구업무와 관련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 연구지원성격 사업 ○ 연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고도화(지식정보시스템, 행정(인사·채용, 전자증빙시스템 등)) ○ 연구몰입도 제고를 위한 연구(업무)환경 개선(단, 연례적 추진 경상비적 성격 제외)
교육훈련사업	○ 연구기관 소속직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등 사업
기관발전사업	○ 기타 연구기관장이 기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 경제인문사회계 청년인턴사업 수행 ○ 지방이전경비 ■ 건물 원상복구비용 ■ 장기차입금 상환 ■ 출퇴근 버스 구입 및 운영경비 ■ 종전부동산 매각 감정평가비 ■ 연구·행정공간, 시설·장비 등 이전 ■ 연면적 증가 등에 따른 아웃소싱 경비, 공공요금 및 자산관리유지비 등 증가 비용 ■ 지방이전 이사비용 부족분 ■ 기관장 관사 구입, 직원사택 임차 ○ 기관발전을 위한 조직진단 컨설팅 등

117) 「2024회계연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101p.

○ 즉, 연구개발적립금의 설치 목적은 연구기관의 자체연구사업 등을 통한 연구개발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본래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¹¹⁸⁾, 이를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적립금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한 퇴직(전직)자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지양하고, 연구개발적립금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적정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118) 「연구기관 회계처리 및 결산지침」 제21조(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8. 연구개발적립금

연구개발적립금은 연구기관이 향후 연구기관의 자체연구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 등 연구재투자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적립금으로 하며, 기중 변동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16. 한국환경연구원¹¹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형태 개선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환경연구원” 사업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한국환경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19억 4,200만원 중 210억 1,5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6,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 8,9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한국환경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환경연구원	21,745	21,745	197	-	-	21,942	21,015	161	789	22,900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119) 세부사업: 한국환경연구원(1554-301)

2) 검토의견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형태 개선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¹²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고,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이 포함됨.¹²¹⁾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에 속하는데,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기관의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되었는데,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를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함.¹²²⁾

□ 한국환경연구원은 2024회계연도에 714만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전액 정규직 지원인력에게만 지급하였음.

120)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12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12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0조(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⑥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연구원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전액을 지원인력에게만 지급한 것은 연구인력의 경우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나, 지원인력은 연구수당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러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우수한 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전액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집행이라 보기 어려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환경연구원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지원인력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도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수 지원인력의 판정 기준을 수립하고, 지급대상도 일정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로 기능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환경정책교육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필요

- 한국환경연구원은 2001년부터 우수 연구성과를 이러닝 학습자료로 개발하여 환경분야의 지식을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환경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정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억 8,700만원 중 2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4회계연도 환경정책교육원 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72	272	15	-	287	277	1	-	272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 교육원 과정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환경정책 이해 증진 교육을 제공하는 입문과정, 환경 종사자나 관련 학습자를 위한 실무 강의 등을 제공하는 일반과정, 환경 분야 종사자, 연구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환경정책의 올바른 수립을 위한 이론 및 사례 중심의 강의를 제공하는 심화과정, 본 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과정을 대학교, 기관, 기업의 교육 특성에 맞춰 선택하거나 조정하여 제공하는 맞춤형교육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에는 입문과정 58과목, 일반과정 15과목, 심화과정 8과목 등 총 81과목을 운영하였고 공공기관 맞춤형 교육 61건을 운영하였음.

〈환경정책교육원 교육과정〉

구분		대상	역할
입문과정 (58과목)	(1~3차시) 환경 의식 제고와 환경정보 불평등 해소	전 국민	-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국민의 환경정책 이해 증진 교육 제공 - 대상별/수준별로 차별화된 맞춤 콘텐츠 보급 - 연구보고서, 환경포럼, 환경정책연구 등 연구 성과물에 기반을 둔 교육 제공 - 환경영향평가 등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 제공
	(6~8차시) 환경 이해 증진 및 환경정보 제공	일반인 (성인 등)	- 환경 종사자나 관련 학습자를 위한 실무 강의 제공 - 올바른 국토 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교양 수준의 교육 - 일반 시민(성인) 대상 환경의식 고취 및 본원의 연구성과 홍보 - 환경영향평가 인식 확대를 위한 개론 수준 교육
심화과정 (8과목)	(16차시 분량) 환경 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대상 환경 소통	공무원, 대학(원) 생 등 환경 전문가	- 환경 분야 종사자, 연구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KEI 연구 성과의 소통 창구 - 환경정책의 올바른 수립을 위해 이론 및 사례 중심의 교육 운영 - 각종 환경정책 관련 기초 정보 및 데이터에 기반을 둔 환경교육
	환경영향평가 전문 지식 제공	환경영향 평가 업체, 기타 산업체	- 평가서 작성을 위한 실무교육 - 평가서 작성 관련 기초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교육제공 등 환경영향평가사 실무교육
맞춤형 교육과정 (61건)	환경 인식 제고	기관, 기업, 대학, 교사, 학생	- 본 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과정을 대학교, 기관, 기업의교육 특성에 맞춰 선택하거나 조정하여 제공 - 교육 차시 단위로 콘텐츠를 재구성할 수 있고 과목 명칭도 다양하게 신청 가능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 최근 4년간 과정별 신청·수료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신청 및 수료 인원이 각각 56,309명, 45,244명으로 2021년 50,056명, 30,415명 대비 각각 12.5%(6,253명), 48.8%(14,829명) 증가하였음.

〈최근 4년간 과정별 신청·수료 현황〉

구분		신청			수료			수료율(%)		
		일반 시민	공무원 등	소계	일반 시민	공무원 등	소계	일반 시민	공무원 등	전체
21	입문	22,978 (64.3)	12,740 (35.7)	35,718 (100)	10,797 (59.1)	7,460 (40.9)	18,257 (100)	47.0	58.6	51.1
	일반	5,545 (40.8)	8,046 (59.2)	13,591 (100)	7,365 (61.8)	4,543 (38.2)	11,908 (100)	132.8	56.5	87.6
	심화	546 (73.1)	201 (26.9)	747 (100)	177 (70.8)	73 (29.2)	250 (100)	32.4	36.3	33.5
	소계	29,069 (58.1)	20,987 (41.9)	50,056 (100)	18,339 (60.3)	12,076 (39.7)	30,415 (100)	63.1	57.5	60.8
22	입문	37,020 (92.7)	2,894 (7.3)	39,914 (100)	17,125 (89.9)	1,928 (10.1)	19,053 (100)	46.3	66.6	47.7
	일반	6,315 (86.9)	949 (13.1)	7,264 (100)	4,666 (88.4)	615 (11.6)	5,281 (100)	73.9	64.8	72.7
	심화	976 (78.1)	273 (21.9)	1,249 (100)	544 (70.9)	223 (29.1)	767 (100)	55.7	81.7	61.4
	소계	44,311 (91.5)	4,116 (8.5)	48,427 (100)	22,335 (89.0)	2,766 (11.0)	25,101 (100)	50.4	67.2	51.8
23	입문	17,518 (52.3)	16,009 (47.7)	33,527 (100)	13,645 (54.7)	11,278 (45.3)	24,923 (100)	77.9	70.4	74.3
	일반	12,020 (88.2)	1,603 (11.8)	13,623 (100)	8,182 (88.5)	1,064 (11.5)	9,246 (100)	68.1	66.4	67.9
	심화	1,409 (86.7)	216 (13.3)	1,625 (100)	738 (83.8)	143 (16.2)	881 (100)	52.4	66.2	54.2
	소계	30,947 (63.4)	17,828 (36.6)	48,775 (100)	22,565 (64.4)	12,485 (35.6)	35,050 (100)	72.9	70.0	71.9
24	입문	4,203 (10.1)	37,299 (89.9)	41,502 (100)	2,753 (8.0)	31,475 (92.0)	34,228 (100)	65.5	84.4	82.5
	일반	12,081 (92.8)	942 (7.2)	13,023 (100)	9,262 (92.8)	717 (7.2)	9,979 (100)	76.7	76.1	76.6
	심화	1,685 (94.5)	99 (5.5)	1,784 (100)	956 (92.2)	81 (7.8)	1,037 (100)	56.7	81.8	58.1
	소계	17,969 (31.9)	38,340 (68.1)	56,309 (100)	12,971 (28.7)	32,273 (71.3)	45,244 (100)	72.2	84.2	80.3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 그러나, 일반시민은 2024년 신청인원과 수료인원이 각각 17,969명, 12,971명으로 2021년 29,069명, 18,339명 대비 각각 38.2%(△11,100명), 29.3%(△5,368명)가 감소하였음.
- 이러한 일반시민의 교육원 신청 및 수료인원의 감소는 우리나라 환경 문제 및 관련 정책의 국민 소통과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 및 보급하여 국민 환경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교육원의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교육원의 2024회계연도 홍보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80만원 중 264만원을 집행하고, 500매의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위주로 배부·홍보하여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교육원 2024회계연도 홍보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집행	잔액	비고
수용비 (브로슈어 제작)	480	264	136	2024.11.12. 500부 제작 배부: 맞춤형 교육 수요기관(① 기초지자체 150부, ② 광역지자체 80부, ③ 공공기관 50부, ④ 민간 50부) 에 330부 배부, ⑤ 세미나 포럼 50부, ⑥ 각종회의 20부, ⑦ 교육박람회 20부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 따라서, 한국환경연구원은 교육원 운영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일반 시민의 참여비중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안내 브로슈어 제작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반국민의 교육원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참여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